5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4.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목 차

Ⅰ. 재정패널조사의 개요 ····· 1

1. 조사 배경 ····· 1
2. 조사 목적 ····· 2
3. 기대효과 ····· 2
4. 조사개요 ····· 3
5. 조사 진행 일정 ····· 5

Ⅱ. 조사 설계 ····· 6

1. 표본설계 ····· 6
2. 패널유지율 ····· 14
3. 가중치 산출 ····· 21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30

Ⅲ. 조사 내용 ····· 34

1. 설문지 구조 ····· 34
2. 가구용 설문지 내용 ····· 35
3. 가구원용 설문지 내용 ····· 38

Ⅳ. 실사 진행 과정 ····· 42

1. 주별 진행 상황 ····· 42
2.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 43
3. 가구 설문지 응답자 선정 ····· 43
4.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선정 ····· 44

Ⅴ. 재정패널 표본 특성 ····· 45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45
2. 표본 가구의 구성 ····· 47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48

Ⅵ. 가구 설문지 조사결과 요약 ····· 51
1. 주택 현황 ····· 51
2. 자동차 보유 현황 ····· 58
3. 가구 소득 현황 ····· 62
4. 가계 지출 현황 ····· 68
5.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 73
6. 복지현황 ····· 75
7. 자산 및 부채 ····· 79
8.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 85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 결과 요약 ····· 92
1. 경제활동상태 ····· 92
2. 가구원 소득 현황 ····· 98
3. 연간 연금보험 지출 ····· 104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108
5. 소득공제 내역 ····· 110
6.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 ····· 116

Ⅷ. 소득근거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 121
1. 소득근거자료 제출 현황 ····· 121
2. 인구통계학적 특성 ····· 122
3. 가구 및 개인 소득 비교 ····· 125
4. 가구 자산 및 부채 비교 ····· 127

Ⅰ. 재정패널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효율적인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패널조사를 통해 생산된 종단 조사 자료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횡단 조사 자료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패널조사의 장점을 인식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등)를 기획하여 장기간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과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시 정책효과의 제시의 선행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청년실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가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정책의 성과 평가나 정부지출의 불합리성 및 국민부담의 개선을 위한 평가를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가장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가계의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8년 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2014년 2월 현재 7차년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2. 조사 목적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하는 조사 자료로서,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기대효과

재정패널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기준년도 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로 인해 시간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

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데이터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4.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5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 추출한 620 가구[1]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표본가구의 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설문지의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과 가구원(개인)용이 세트를 이룬다. 가구 설문지는 가구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설문지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응답 받는다. 가구 설문지에서는 가구원 인적사항 및 가구의 일반 현황, 소비지출 및 가계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 설문지는 가구원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과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조사되며 종단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정패널 조사는 부가조사의 형태로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현상을 측정하고자

1) 1차년도 추출된 원표본 가구 중 2차년도 조사시점 당시 강력 거절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원표본 표집틀을 활용하여 이들 가구를 대체할 가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표본 추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200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 리스트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하였다. 부가조사는 종단 분석이 가능한 문항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한 해에만 1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차수마다 그 주제가 변경된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소득이 없더라도 20~39세의 기혼 여성과 그 배우자이라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5차년도 조사에서는 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부모 및 가구주 배우자 부모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2014년 베타자료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6차년도[2] 조사에서는 가구원의 출산이력에 대한 문항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부가조사는 1회 조사만 진행되지만 종단자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 실사 수행기관

2012년 2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3]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마케팅·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esearch International이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라.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5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12년 5월부터 9월 첫 주까지 진행되었다. 재정패널 조사의 상당수 문항들은 작년 한해(5차년도의 경우 2011년)의 상황을 묻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11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저량(stock)은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설문지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1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

2) 6차년도(2013년) 조사자료는 2014년 7월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베타 버전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며, 2015년 3월 공식자료 발간예정에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panel.kipf.re.kr)를 참고하기 바라며, 설계된 문항에 대한 질문은 panel@kipf.re.kr로 가능하다.

3) 각 조사차수별 선정시기 : 1차년도 2007년 12월~2008년 2월, 2차년도 2009년 2월~4월, 3차년도 2010년 2월부터~4월, 4차년도 2011년 2월~2011년 4월

(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치 조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조사 도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5. 조사 진행 일정

5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5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당초 8월 말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름휴가철이 겹치면서 일부 패널과의 약속이 연기되고,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표 Ⅰ-1> 재정패널 조사 진행 일정

항목	진행 일정	
	4차년도	5차년도
조사 용역 수행 기관 선정	3월	3월
조사 설계 및 협의	3월~4월	3월~4월
면접원 교육	4월 27일~4월 29일	4월 24일~4월 26일
현장 실사 진행	**5월~8월**	**5월~9월**
검증 및 통계 처리	7월~9월	7월~9월
중간보고회 개최	8월 9일	8월 8일
1차 데이터 제출	10월 7일	10월 9일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	11월 4일	11월 5일
최종보고회 개최	12월 14일	12월 11일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9일	12월 28일
2차 데이터 제출	12월 29일	12월 28일
자료 신뢰도 보고서 제출	12년 1월 12일	13년 2월 7일

Ⅱ.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가. 모집단(표집틀)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를 기본으로 하는 조사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4]와 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5]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재정패널 조사의 최초 시작시점(2008년)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작성 시점(2005년)간에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있었다. 이에 따라 표집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나. 표본크기 설정

표본크기는 표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표본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집단과의 오차(표본오차)는 감소할 수 있으나, 일정한 표본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차의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 표본크기 증가의 효과가 감소한다. 또한 조사여건에 맞지 않게 표본수를 크게 설정할 경우 무리한 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오히려 오차(비표본오차[6])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목적과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본크기의 결정이 중요하다.

재정패널 조사는 적절한 유효 표본수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증 및 예비

4) 일반 가구란 1인 또는 1인 이상의 가족(친인척)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의 생활을 6개월 이상 지속하여온 가구를 의미한다.

5) 가구원은 조사대상 가구에 6개월 이상 경제생활을 함께 하며 생활한 사람으로, 가정부 및 종업원, 하숙생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하지 않은 가족 중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하여 비동거한 경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6) 비표본오차는 응답자의 거짓 응답, 무응답이나 면접원의 선택편향, 지침 위반, 불성실한 태도 등 실사 진행과정에서 비롯되는 오차를 의미하며,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한 오차이다.

조사를 진행하였고, 5,000개의 가구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에 충분한 규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상으로 표본 수를 늘리기보다 5,000가구의 표본을 충실히 조사해서 비표본오차를 줄이는 것이 조사 품질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다. 표본설계 개요

재정패널 조사는 모집단에서 추출할 적절한 표본 크기를 5,000가구로 설정 한 후 2007년 예비조사를 수행 하여,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 추출된 원표본 가구는 총 5,014개 가구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기인 2009년 6월부터 2차년도 조사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경우 이사·이민·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미고지 등으로 추적 실패가 발생하거나, 계속 조사에 대한 부담감, 가구 내부 사정 등에 의한 응답 거절 등으로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원표본 가구의 조사실패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패턴은 국내외 패널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7]이며, 재정패널 조사 역시 2차년도 조사에서 원표본(5,014가구)의 조사성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87.7%, 4,396가구)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표본 패널의 탈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차적 과제이지만, 조사를 강력하게 거절하는 가구에게 계속 조사요구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표본에 대해서는 추가 표본을 추출해서 대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즉각적인 추가표본의 존재는 국내 다른 패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정패널조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 당시 설정한 크기(5,000가구 이상)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매년 추가표본을 추출한다면, 가중치 보정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종단분석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조사부터는 추가표본을

7) 국내외 타패널조사 2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 1차년도의 원표본 유지율이 100%일 때, 노동패널조사 87.6%(1999년), 미국 PSID 88.0%(1969년), 독일 GSEP 90.0%(1985년), 영국 BHPS 88.0%(1991년)로 10~12.4%p 하락 함.

추출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표본가구와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2차년도 추출 표본 개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패널조사 표본의 주요 특징은 추적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어 발생하는 개체 무응답(Unit non - response)의 경우 주로 가중치의 보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나, 탈락 가구가 체계적으로 발생할 경우 종단 분석의 모수추정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표본 탈락의 최소화는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서 탈락되는 표본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조사 차수(wave)별 표본수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타패널조사의 경우 종단면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 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연구목적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거절 가구나 접촉 불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시간과 요일을 조정하여 4회 이상 재방문하되, 그 이후에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표본 탈락 가구로 정의하고 2차년도 조사에서 탈락 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표본을 추가 추출하도록 하였다.

탈락한 가구를 대신하여 추출된 가구가 탈락한 가구를 완벽히 대표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8]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가중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되고 가중치를 산출 할 때 원표본의 기준을 1차년도 조사에서 추출된 표본①과 2차년도 조사의 추출표본을 포함한 표본②로 나누어 2개의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즉,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개년도

8) 송헌재(2012),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72호)97-133

(2009년~2010년) 종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 작성하였다. 이는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선택에 맡겨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패널조사 자료에 각기 다른 종단면 가중치가 존재할 경우,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탈락했던 원가구가 다시 조사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패널 표본 내에 원가구와 이를 대신한 추가표본가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지만, 이미 추가된 표본가구에 가중치가 계산되어 있으므로 원가구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년도 조사완료 후 이전과 다른 방식의 추가표본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기로 하였다. 우선 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에서는 2차년도에 추출된 620개 표본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1차년도 최초표본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차년도 이후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기준으로 계속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전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에 다음 연도에서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응답 보정과 레이킹 보정이 이루어져 산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의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중치 수정과 덧붙여 용어 정의를 새롭게 수정하였다. 3차년도 이전까지 사용하던 '대체표본'이라는 용어를 '2차년도 추출표본'으로 수정하도록 하였고, 원표본에 '2차년도 추출표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서 정의하는 원표본은 1차년도에 추출된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된 표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1> 재정패널조사 표본 재정의

구분	용어의 재정의	
	3차년도 이전	4차년도 이후
1차년도 추출표본: 5014가구	원표본	1차년도 추출표본
2차년도 추가 추출표본: 620가구	대체표본	2차년도 추출표본
원표본	원표본 (5,014가구)	1차년도 추출표본 + 2차년도 추출표본 (5,634가구)

1) 원표본 추출 과정-1차년도 추출표본

1차년도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축아파트 입주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는데, 이 때 조사구는 전수조사구 90%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2005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지역으로 센서스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이후 입주아파트를 우선 60~80가구 정도씩 묶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구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실제 분포보다 많이 표집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했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수는 5개로 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5개 가구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 표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조사구 수는 1,002개로 설계하였고, 5,014 가구가 표집되었다. 1차년도에 최종 표집된 표본의 구성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 1차년도 조사 추출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108	1,797	620	174	275	40	5,014
서울	556	429			90		1075
부산	225	130	10		20		385
대구	150	95	10	10	15	5	285
인천	116	105	10		15		246
광주	95	80			10		185
대전	95	76			10		181
울산	55	55	10	10	10		140
경기	326	371	75	44	45	15	876
강원	60	60	35	10	10		175
충북	55	61	35	10	5	5	171
충남	50	50	70	20	10	5	205
전북	85	75	75	10	10		255
전남	65	55	115	10	10		255
경북	80	70	110	20	5	5	290
경남	95	85	65	30	10	5	290

2) 원표본 추출 과정-2차년도 추출표본

2차년도 추출표본을 추가한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하도록 하는데,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표 Ⅱ-3> 2차년도 조사 추가추출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94	216	37	19	48	6	620
서울	102	78			25		205
부산	28	13			3		44
대구	15	7	2	1	4		29
인천	18	18	2		2		40
광주	8	6					14
대전	15	5					20
울산	7	5		1			13
경기	56	42	8	7	9	3	125
강원	5	2	2	1			10
충북	9	8	7	2	1	2	29
충남	3	5	6		2		16
전북	7	6	3		2		18
전남	3	3	1				7
경북	9	8	3	4			24
경남	9	10	3	3		1	26

3) 재정패널조사 원표본 구성

4차년도 조사완료 후 진행된 가중치 부여 방법 수정에 따라 재정패널조사의 원표본 정의가 <표Ⅱ-1>과 같이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4> 재정패널조사 원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402	2,013	657	193	323	46	5,634
서울	658	507			115		1,280
부산	253	143	10		23		429
대구	165	102	12	11	19	5	314
인천	134	123	12		17		286
광주	103	86			10		199
대전	110	81			10		201
울산	62	60	10	11	10		153
경기	382	413	83	51	54	18	1,001
강원	65	62	37	11	10		185
충북	64	69	42	12	6	7	200
충남	53	55	76	20	12	5	221
전북	92	81	78	10	12		273
전남	68	58	116	10	10		262
경북	89	78	113	24	5	5	314
경남	104	95	68	33	10	6	316

4) 분가가구 추적 조사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분가한 경우 해당 가구원을 추적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해당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신규가구로 처리하는데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이러한 가구들을 분가에 의한 신규 가구(이하 분가 가구)라고 정의한다. 분가 가구의 경우 원표본 추출법에 의거하여 추출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종단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횡단면 가중치만 제공된다. 해당 가구는 재정패널조사의 대상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던 가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가구에서 분가하는 가구원들의 경우 결혼,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가구원들이 많고, 분가는 정상적인 가구 분리 현상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가 가구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패널가구의 노쇠화가 진행되고 신규 생성가구는 조사에서 누락되므로 전체 모집단 특성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분가가구 추적시에는 가구의 정의[9]에 따라 조사시점 작년 한해 동안 6개월 이상 생성된 가구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5차년도의 경우 2011년 6월 이전 분가한 가구원의 가구는 정식 분가가구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구의 경제활동을 모두 조사하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분가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2011년에 원 가구에서 6개월 이상 동거하였기 때문에 원 가구의 가구원으로 분류하여 다음해부터 정식 분가가구로 인정한다.

가구원의 전출이 발생하였더라도 분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군입대나 가출의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결혼하지 않은 대졸자 이하의 자녀가 학업목적으로 분가했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원 가구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가로 추적 조사하지 않았다.

2. 패널유지율

가. 원표본 패널유지율

1차년도 추출가구와 2차년도 추출가구로 구성된 원표본 5,634가구 중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4,500가구로 원표본 패널유지율은 79.9%이다.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유지율은 재정패널 조사가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원표본에 대한 조사 성공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2.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조사 실패 비율이 지방과 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6페이지 일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각주 참조

<표 II-5> 원표본 패널유지율 A : 분모에 사망과 이민 포함

시도	지역별 원표본 가구수 (가구)	5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가구)	원표본 패널유지율 (%)
전국	5,634	4,500	79.9
서울	1,280	921	72.0
부산	429	345	80.4
대구	314	256	81.5
인천	286	213	74.5
광주	199	169	84.9
대전	201	172	85.6
울산	153	124	81.0
경기	1001	774	77.3
강원	185	159	85.9
충북	200	171	85.5
충남	221	191	86.4
전북	273	234	85.7
전남	262	233	88.9
경북	314	257	81.8
경남	316	281	88.9

주1: 원표본 패널유지율은 1차년도 추출표본과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의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5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위의 표에서 살펴본 '원표본 패널유지율 A'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구축된 원표본 가구를 분모에 모두 포함하였을 때(n=5,634)의 패널유지율이다. 그러나 동일한 가구를 계속 추적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는 조사 대상인 원표본 가구의 '사망'과 '해외이민'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가구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조사 실패가 아닌 대상 소멸로 판단 할 수 있고, 패널유지율 산출시에도 소멸된 가구를 제외한 유지율('원표본 패널유지율 B', '유효표본 패널유지율')(n=5,569)을 제시하여 보다 정확한 유지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II-6> 원표본 유지율 A, B 계산방법

구분	계산법	유지율 산출 분모
원표본 유지율(A)	표집된 원가구 전체를 분모로 함	5,634
원표본 유지율(B)	원가구 중 소멸가구(이민과 사망)를 분모에서 제외	5,569

2008년 조사 이후 대상 소멸에 의해 원표본 패널유지율B에서 제외된 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7> 원표본 패널유지율 B : 분모에서 사망과 이민 제외

시도	지역별 원표본 가구수	5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표본 패널유지율
전국	5,569	4,500	80.8
서울	1,265	921	72.8
부산	421	345	81.9
대구	309	256	82.8
인천	283	213	75.3
광주	197	169	85.8
대전	200	172	86.0
울산	150	124	82.7
경기	994	774	77.9
강원	184	159	86.4
충북	197	171	86.8
충남	219	191	87.2
전북	270	234	86.7
전남	258	233	90.3
경북	307	257	83.7
경남	315	281	89.2

주1: 원표본 패널유지율은 1차년도 추출표본과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의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5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전체 원표본 중 가구 소멸로 분류된 가구는 총 65가구로, 해외이민(해외 장기

거주)으로 파악된 가구는 32가구, 가구원 전원 사망에 의해 소멸한 가구는 33가구이다. 원표본 패널유지율 B에서는 5,634개의 원표본 가구 중 소멸된 65가구를 제외한 5,569개의 가구가 유지율 산출의 분모로 적용되었다. 원표본 패널유지율 B의 계산 결과, 5차년도 패널 유지율은 80.8%(전국기준)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조사의 5차년도 원표본 패널유지율(B) 80.8%는 국내외 유수 패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조사로 불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유지율(76.0%)과 비교해 볼 때, 약 4.8%p 정도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회조사 응답률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표 II-8>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단위(%)	재정패널	노동패널	미국PSID	독일GSEP	영국BHPS
2차년도	89.3(2009)	87.6(1999)	88(1969)	90(1985)	88(1991)
3차년도	84.8(2010)	80.9(2000)	84(1970)	86(1986)	81(1992)
4차년도	82.7(2011)	77.3(2001)	82(1972)	85(1987)	80(1993)
5차년도	80.8(2012)	76.0(2002)	79(1972)	81(1988)	77(1994)

주1: 괄호 안은 조사가 진행된 년도 (타 조사 유지율은 노동패널 5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인용)
주2: 노동패널의 유지율 계산 방식은 패널유지율(B)로 확인됐으나, 해외 패널 유지율은 계산 방식을 확인하지 못함
2: PSID : Panel Study Income Dynamics
3: GS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
4: BHPS :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다. 분가 표본가구 유지율

1차년도 조사에서는 표집 되지 않았으나 2차년도 조사 이후 분가한 가구 중 4차년도 조사 시점(2011년)까지 한 번이라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총 244가구이며, 이들 중 5차년도(2012년) 조사에 성공한 가구 수는 212가구이다. 따라서 분가가구 유지율(A)은 86.9%로 계산된다.

<표 II-9> 분가가구 유지율

시도	분가가구			
	추적해야 하는 분가가구	2012년 조사성공	유지율A(%)	유지율B(%)
전국	244	212	86.9	89.5
서울	43	38	88.4	88.4
부산	18	16	88.9	100.0
대구	18	15	83.3	93.8
인천	10	9	90.0	90.0
광주	17	15	88.2	88.2
대전	4	4	100.0	100.0
울산	12	12	100.0	100.0
경기	28	22	78.6	84.6
강원	7	5	71.4	71.4
충북	3	2	66.7	66.7
충남	8	5	62.5	62.5
전북	27	25	92.6	92.6
전남	15	14	93.3	100.0
경북	12	9	75.0	75.0
경남	22	21	95.5	95.5
제주	0	0	-	

라. 조사 실패 가구 현황

1) 원표본 가구 중 조사 실패·소멸 가구 유형

조사 실패한 가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분 될 수 있다.

① 강력거절 : 표본가구가 조사 참여를 완강히 거절한 경우
② 추적실패(주소 불명) : 전화번호 결번 등으로 사전 컨택이 되지 않으며,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사로 추정되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망/이민/입원 등 : 가구 응답자가 각각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 장기 부재, 약속 반복 위반, 비정상적인 응답자 등

2) 원표본 가구 중 조사 실패·소멸 가구 현황

5차년도 조사 참여를 거부한 1,069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강력거절로 인한 조사 실패가 631가구로 전체의 59.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추적실패는 410가구로 38.4%였다. 사망과 이민 등으로 소멸된 가구는 총 65가구로 집계되었다. 표본추출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 실패 및 소멸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0> 시도별 원표본 조사 실패 및 소멸 가구 현황

시도	조사 실패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병원 입원	기타	*소계*	사망	해외 이민	*소계*
전국	631	410	10	18	1,069	33	32	65
서울	204	130	1	5	340	2	12	14
부산	44	29	1	1	75	6	2	8
대구	42	9		2	53	2	3	5
인천	43	26	1		70	2	1	3
광주	20	6	1		27	2		2
대전	12	15			27		1	1
울산	14	12			26		3	3
경기	121	100	2	4	227	3	5	8
강원	13	11			24	1		1
충북	18	7	1		26	1	2	3
충남	17	10		1	28	2		2
전북	24	8		2	34	3		3
전남	13	11		1	25	4		4
경북	25	23	2	1	51	4	3	7
경남	20	13	1	1	35	1		1

3) 분가가구 중 실패·소멸 가구 현황

분가가구의 조사 실패 사유 역시 '강력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 분가가구의 조사 실패 사유 중 특이한 점은 '원가구 합가'에 의한 가구 소멸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원가구 합가'란 4차년도 조사시점 이전에 분가하여 생성

된 분가 가구가 다시 원가구에 합가하여 5차년도 조사당시에는 가구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모두 4가구가 '원가구 합가' 사유로 소멸되었다.

<표 II-11> 분가가구 조사 실패 사유 및 소멸가구 유형

시도	조사 실패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기타	*소계*	사망	해외 이민	원가구 합가	*소계*
분가 가구	15	10	0	25	1	2	4	7

마. 신규 분가가구 현황

5차년도 조사 결과 총 72가구의 분가 가구가 신규로 조사되었다. 이 중 2011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는 이미 분가 가구원이 새로운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의 지난해 경제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설문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30가구이며, 이 가구는 2012년도 재정패널조사 결과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이후 분가하여 형성된 가구는 분가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최초 표본가구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6차년도부터는 이 분가가구 또한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가구원으로 구성되므로, 차후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가구는 42가구이며, 이 가구는 6차년도(2013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5차년도 분석 과정에서 이들 가구의 데이터는 제외된다.

5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표집된 분가가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혼인으로 인한 분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장(28건), 학업(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2> 분가 유형별 분가 성공 가구수

구분	혼인	직장	학업	이혼	기타	합계
전체	30	28	5	1	8	72
서울	6	6			1	13
부산	7	3	1		1	12
대구	2	1	2			5
인천		1			1	2
광주	1	1				2
대전			1			1
울산	2	2				4
경기	3	5				8
강원	2	2			1	5
충북	1			1		2
충남					1	1
전북	1	2				3
전남		1			1	2
경북		2	1		2	5
경남	5	2				7

3. 가중치 산출

가. 가중치 산출 목적 및 필요성

재정패널 분석결과가 모수의 불편 추정량(근사 불편 추정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중치 산출의 목적이다. 특히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panel survey)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웨이브(wave)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원 패널가구의 가구원이 분가 등을 통해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서 신규 가구가 패널에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기 위해서는 가중치 산출 및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널조사의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한

표본 및 모집단 변동을 감안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을 위한 가중치과 함께 동적 변화 파악을 위한 종단면(longitudinal) 분석용 가중치를 분리하여 생성하고 적용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통계분석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다.

나. 1차년도(2008년) 조사 가중치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 표본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또는 레이킹(raking ratio)에 의한 조정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재정패널조사의 1차년도 가중치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다.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보정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1) 표본설계

재정패널조사를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와 2006~2008년 신규 아파트 자료를 병합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발생한 가구 모집단의 변화를 표집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규 아파트 자료의 구분 변수를 1차 층으로 정의하고 각 층으로부터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함으로서 재정패널 표본을 구성하였다.[10)]

각 표집틀로부터 가구 추출을 위해서는 각 표집틀을 층화한 후 각 층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층화 이단계 추출법이 사용되었다. 9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 읍면/동부, 일반/아파트가 사용되었으며 층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조사구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신축아파트 자료의 경우, 근접 가구들을 묶어서 크기가 50~100인 일종의 조사구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조사구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을 사용하였고 정렬변수로는 시군구와 대표평수를 사용하였다.

10) p.10. <표 Ⅱ-2> 1차년도 조사 추출표본 구성 참조.

각 표집틀에서 정의된 층의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실제로 빈곤지역과 부유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패널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의 할당 조사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추출된 조사구로부터 평균적으로 5가구씩 추출하였다.

2) 표본설계 가중치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추출 원표본 5,014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된 620가구를 합하여, 총 5,634 가구의 원표본에 표본설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차년도에 추출된 620가구는 2차년도에 조사 실패한 618개의 1차년도 원표본 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추가된 가구이다(실패한 가구에서 두 가구가 추가로 조사되어 실패가구와 대체된 가구의 수에 차이 발생). 따라서 1차년도 가중치 산출에서는 620개 대체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된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j번째 가구의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위 식에서 N_h는 h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는 h층의 표본 조사구수, N_{hi}는 h층 조사구 i의 모집단 가구수, 그리고 n_{hi}는 h층 조사구 i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낸다.

1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진다. 응답률은 r_{hi}/n_{hi}로 계산되어 지며, r_{hi}는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수이다. 조사된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j번째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na}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times \left(\frac{r_{hi}}{n_{hi}} \right)^{-1} = \frac{N_h}{n_h} \times \frac{N_{hi}}{r_{hi}}.$$

3) 레이킹(raking) 가중치 보정

산출된 무응답 보정 가구 가중치(w_{hij}^{na})는 다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각 지역별(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rak} = w_{hij}^{na}\exp\left(\underline{x}_{hij}^{'}\,\underline{\lambda}\right)$$

여기서 $\underline{x}_{hij}$는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지시변수들로 표현한 벡터이며 $\underline{\lambda}$는 $\sum w_{hij}^{rak}x_{hij} = t_x$의 해이며, t_x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각 레이킹 변수들의 추계 값을 나타낸다. 레이킹을 통한 가중치의 보정 결과 2008년 추계 자료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9,000으로 제한하였다. 가중치가 9,000을 초과하는 극단 관측치들의 경우 가중치를 9,000으로 조정하고, 레이킹 보정 가중치에서 9,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벤치마킹범주(지역*가구주 성*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다. 2차년도(2009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2개년도(2008년과 200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에 2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위한 무응답 보정과 2009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계산되어 진다.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는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2008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응답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2008년에 작성된 각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w_{2008}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009}$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2009} = w_{2008} \times \hat{p}_{2009}^{-1}$$

로 표현된다. 실제 $\hat{p}_{2009}$의 예측을 위하여 적합된 로지스틱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09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시용되었다. 2009년 레이킹을 위해서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500으로 제한하였다.

2)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가구(1차년도 추출가구, 2차년도 추출가구)와 분가가구(2008년 6월 이전 분가)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09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각 가구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된 원표본가구의 경우,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 방법은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사용했으며,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9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로는 원패널 가구의 경우 종단면과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2008년 자료가 없는 2차년도 추출가구는 대응되는 1차년도 추출패널 가구(2차년도 조사실패 가구)의 2008년도 5개 변수(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연간소득총액)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사유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가구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12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3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를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내에서 2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원표본 가구와 분가가구의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라. 3차년도(2010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3개년도(2008~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가중치 산출에는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2차년도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3개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2)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가구, 기존분가(2008년 6월 이전 분가) 그리고 신규분가(2008년 7월 ~ 2009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원표본 가구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원표본 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0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다. 기존분가의 경우, 3차년도에 모든 가구가 응답하여 2차년도에 부여한 횡단면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1,700으로 제한하였다.

마. 4차년도(2011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4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4개년도(2008년~2011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4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4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4개년도(2008년~201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5,000으로 제한하였다.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가구, 기존분가(2009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09년 7월 ~ 2010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1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원표본 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원표본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1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원표본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4,000으로 제한하였다.

바. 5차년도(2012년) 가중치

재정패널 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5개년도(2008년~2012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5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5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5개년도(2008년~2012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8,000으로 제한하였다.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원표본 가구, 기존분가(2010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0년 7월 ~ 2011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2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원표본 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원표본 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

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원표본 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2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원표본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000으로 제한하였다.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가. 증빙서류 수집 목적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설문지는 개인의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항목들은 응답자의 회상에 의해 조사되는데, 소득공제 내역의 경우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하여 응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개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여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수집 대상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2011년 소득 공제내역을 조사하므로 2012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기로 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12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다. 5차년도 조사 서류 수집 현황

1) 귀속연도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개요

소득증빙자료 수집은 재정패널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실시하는 부분이다. 소득증빙자료 수집률은 실제 조사에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각 가구의 소득증빙서류 제출률에 초첨을 두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의 수집률이 연구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 연도별 소득증빙서류 수집률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매년 조사에서 해당 귀속년도의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과거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수집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의 사례수는 조사차수가 진행될수록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집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의 수집건수에 비해 종합소득신고 가구원의 수집건수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가구원 기준 소득증빙자료 수집 현황

조사년도			해당차수 조사완료 시점 수집 현황					총계
			1차	2차	3차	4차	5차	
최종수집현황	2007 귀속	제출가구원	683	27	2	0	0	712
		근로	611	25	2	0	0	638
		종합	74	2	0	0	0	76
	2008 귀속	제출가구원	-	1,411	19	2	0	1,430
		근로		1,203	12	2	0	1,217
		종합		207	7	0	0	213
	2009 귀속	제출가구원	-	-	1,583	9	0	1,592
		근로			1,339	5	0	1,344
		종합			245	4	0	249
	2010 귀속	제출가구원	-	-	-	1,788	7	1,795
		근로				1,502	6	1,508
		종합				288	1	289
	2011 귀속	제출가구원	-	-	-	-	1,844	1,844
		근로					1,531	1,531
		종합					314	314

주1: 음영은 해당차수의 귀속년도 수집건수로 변동 없는 구간
2: 음영 이외의 구간은 과년도 서류 수집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동 구간이며, 2011년 귀속 자료의 경우 2012년 조사 당시 추가 수집 가능성이 있어 최종 데이터와 수치의 차이가 발생 가능함.
3: 가구원 1명이 근로와 종합 소득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출가구원의 총계는 근로와 종합소득 제출자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5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2012년도 조사 결과 1,695가구에서 1,845건의 서류가 수집되어, 총 4,784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수집률은 35.4%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가구 중 42가구는 2011년 7월 이후 분가로 유효표본이 아니므로, 정확한 수집율은 4,742 가구 대비 35.7%로 계산된다.

과년도 귀속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7개 가구에서 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4개 가구는 2011년 서류를 함께 제출했으며, 3개 가구는 과년도 서류만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14> 5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구분	수량[주1)]
2011년도 귀속서류 수집 건수	1,845
제출 가구원 수	1,844
제출 가구 수	1,695
근로소득 제출건수	1,531
종합소득 제출건수	314

주1) 서류 건수는 최종 수집된 서류의 수량을 의미하며, 가구와 가구원 수는 해당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함.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 가구원이 서류를 2장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 수가 서로 다르게 됨.

다만 소득증빙서류는 모든 가구가 수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일지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 수집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수집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률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대상 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1.2%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은 57.9%가 서류를 제출한 반면,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36.9%만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I-15> 5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율

구분		해당 case[주1)]	제출건수	수집율(%)	[참고] 4차년도 수집율[주2)]
가구	전체 유효표본 가구	4,742	1,695	35.7	34.7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754	1,695	61.2	61.0 (1660/2725)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2,644	1,531	57.9	59.5 (1503/2528)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851	314	36.9	34.5 (288/835)

주1) case 숫자는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임.
주2) 4차년도 수집율은 4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참고.

Ⅲ. 조사 내용

1. 설문지 구조

재정패널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소득 및 지출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원 한 명이 응답해야 한다. 가구원용 설문지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되어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구원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직접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대리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정패널 조사 5차년도 설문지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 설문지의 구조

가구용 설문지	가구원용 설문지
[표지] 가구 적격 여부 확인	[표지]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	↓
가구 기본 현황	경제활동
↓	↓
주택, 종합부동산세, 자동차 보유 현황	소득 및 연금/보험 관련 지출 현황
↓	↓
가계 지출 현황	소득세 유형 및 소득 공제 현황
↓	↓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	
복지현황	
↓	
자산 및 부채 현황	
↓	
근로장려금	
↓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	
유가보조금	

2. 가구용 설문지 내용

가. 가구 기본 현황

가구원수, 이사 계획 등 가구의 기본 현황과 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원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현황 등을 조사하며 조사를 시작하는 파트이다.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해당 가구에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모든 가족들의 출생년월,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변동 여부 및 사유 등을 조사한다. 가구원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현황에서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최종 교육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에서의 졸업여부를 조사하고, 경제활동 상태 역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직업, 종사상 지위, 근로월수 등을 조사한다.

5차년도 조사에서 신규 삽입된 문항은 가구원이 가입 또는 수급 중인 공적연금의 종류를 조사하는 항목이다. 특히 임의가입자의 경우 최초 가입 시점과 작년 한 해 동안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나. 주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주택 현황에서는 주택의 유형 및 점유 형태, 주택 가격, 전월세금, 면적, 거주주택 외 추가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보유기간, 매매차익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자동차 보유현황 파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식과 구입년도, 구입가격, 배기량, 용도,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 및 월평균 차량 유류비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4차년도까지 조사하던 오토바이 보유현황은 자료 활용도 저하로 삭제하였다.

다. 가계 지출 현황

2011년 한 해동안 지출한 금액을 월평균 소비와 월평균 저축으로 나눠 대략적인 지출과 저축액을 먼저 조사하였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가구에서 지출한 주거비, 식료품 및 외식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 구입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스포츠 레저비, 보육·교육비, 보건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가사도우미 서비스비를 조사하였다.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2011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비용은 2011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지출 총액을 측정하였다.

라.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금액에 관한 질문으로 가구원이나 친척, 지인 간에 오고 간 돈의 흐름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함께 사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금액은 가구 전체의 지출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원간 주고받은 용돈과 학비를 제외하고 증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였다.

타가구와 주고받는 이전지출이나 소득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용돈, 생활비, 학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연간 총액을 조사하고, 주거나 받는 사람과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조사하였다.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금액은 일정한 간격을 가진 경우를 의미하지만, 생일이나 명절 등 1년 동안 한 두 번씩 주고받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주거나 받고 있다면 모두 합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가구 내에서 6개월간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잠정적 가구원이 될 2011년 7월 이후 출생 아기나 군대에서 제대한 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지출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경조사 지출과 소득,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상속과 증여 등도 이전지출·소득 항목에서 함께 조사하였다. 5차년도에는 타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부가조사의 성격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전지출과 이전소득의 분석 시에 부모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에 따라 추가하도록 하였다.

마. 복지현황

가구단위로 수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를 측정하고, 개인 단위로 수급하는 경우 수급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의 종류와 해당 가구원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가구단위로 수급하는 사회복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자녀양육지원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5차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원 수와 의료기관 방문 횟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측정하였고,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개인단위로 수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기타 정부지원금 수급현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보훈수당, 기타 정부지원현금에 대해 수혜 받은 가구원 번호를 조사하였고, 수급기간, 수급 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해당 가구원의 설문지에서 조사되도록 하였다.

바. 자산 및 부채 현황

가구용 설문지에서 응답하는 자산 및 부채의 보유 현황은 해당 가구에 귀속된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 모두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본인의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채를 진 경우에도, 부채가 가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채 현황에 포함된다.

자산이나 부채는 조사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5차년도 조사는 2011년 12월 31일)으로 평가액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금 외에 이자나 배당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자산(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에는 적립한 원금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서는 주택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주택 이외 건물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시가총액, 주택 이외 보유 부동산, 보유회원권, 농기계/가축, 선박/건설중장비, 기타 자산 등을 조사하였다. 기타자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자산은 장신구가 아닌 귀금속이다.

부채현황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대출, 돌려주어야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5차년도부터 신용카드 관련 대출 문항을 추가하였다.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부채현황에서는 총대출금 잔액과 연간 상환액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연간 상환총액을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사. 환급금 및 정부보조금 현황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외에 정부로부터 환급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종합소득세환급금, 유가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가구원용 설문지 내용

가. 조사 적격 가구원 선정

가구원용 설문지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2011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보험소득,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구원은 이전소득이 존재하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자녀양육비지원금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일 경우에도 가구용 설문지에만 응답하고 가구원용 설문지는 응답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3차년도 이전 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가구의 가구주에게는 가구원 설문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 경제활동

2011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시점(2012년 5월 1일 기준)의 소득활동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형태는

어떤 것인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 활동 여부와 그 사유,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질문하였다. 소득활동자에게는 일주일간 근무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4차년도에 조사하였던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곳의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부가조사인 관계로 5차년도 부터는 조사하지 않았다.

다. 연금·보험 소득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나 민간연금·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각 연금·보험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고, 5차년도부터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소득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 III-2> 연금·보험 소득

구분	종 류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민간연금·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라. 2010년 정부지원 현금 소득

정부지원 현금 소득은 가구 설문지에서 수혜 가구원만을 조사한 국가유공자보훈연금,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쌀 직불금 포함),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보훈수당, 기타수당을 수급 개월수, 연간 총 수급금액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단,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자녀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구에서 측정하고 가구원의 기타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요양특별급여는 정부지원 현금 소득이 아닌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2011년 연간 소득의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마. 2011년 연간 소득

연간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 및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토지, 주택, 상가 및 사무실, 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타가구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노인요양특별급여/ 그 외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단, 연금·보험 소득은 이미 앞 문항에서 조사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연간 소득에서는 제외해 조사하였다.

바. 연금·보험관련 지출 현황

2011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이나 민간연금·보험에 납부한 금액을 조사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부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고용 보험료 납부 금액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에 연간 납부한 금액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연금과 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하였다.

사.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구원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2011년 한 해 동안 소비·지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조사하였다. 이때 개인용 법인카드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은 금액, 카드론 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하였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영업용/사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지출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구분해 가구가 직접 소비 지출한 금액만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아. 소득세 유형 및 소득공제 현황

가구원용 설문지에 응답한 가구원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현황과 결정세액을 추가로 조사했다. 각각에 대해 조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소득공제항목

구분	공제 항목	세액
근로소득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기타 공제	결정세액
종합소득자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표준 공제, 기타 공제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은 측정이 쉽지 않고, 가구 설문지와 가구원 설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자.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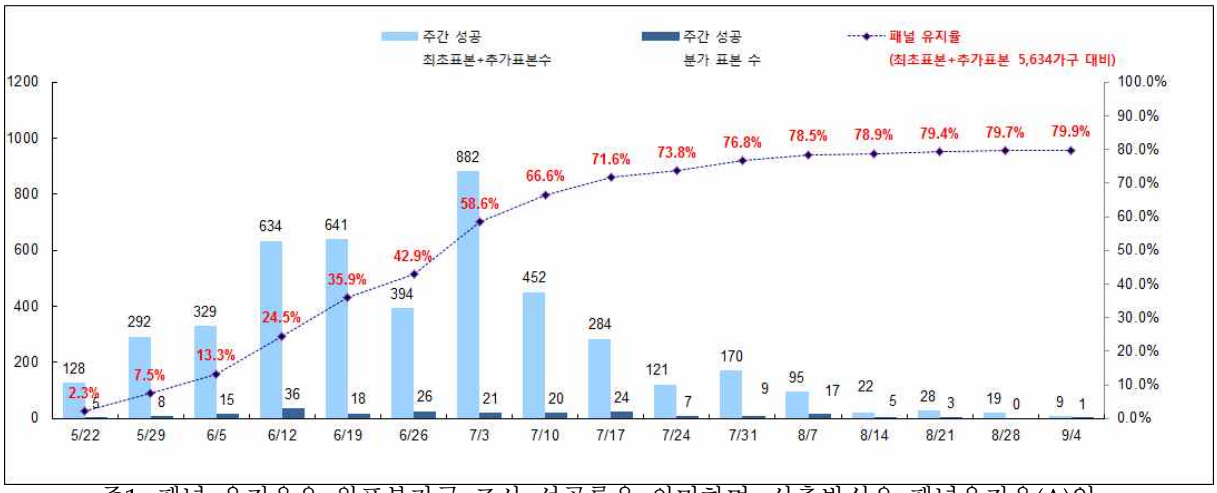
재정패널조사에서 인식을 응답하는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이다. 문항은 총 5개로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납부세금과 비교한 정부 혜택의 수준, 세부담, 복지정책 확대, 복지정책에 의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이다. 본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되는 가구원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Ⅳ. 실사 진행 과정

1. 주별 진행 상황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는 5월 셋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됐다. 당초 8월 초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일부 패널과의 약속이 연기되고,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실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그림 Ⅳ-1] 5차년도 실사 진행 상황



주1: 패널 유지율은 원표본가구 조사 성공률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패널유지율(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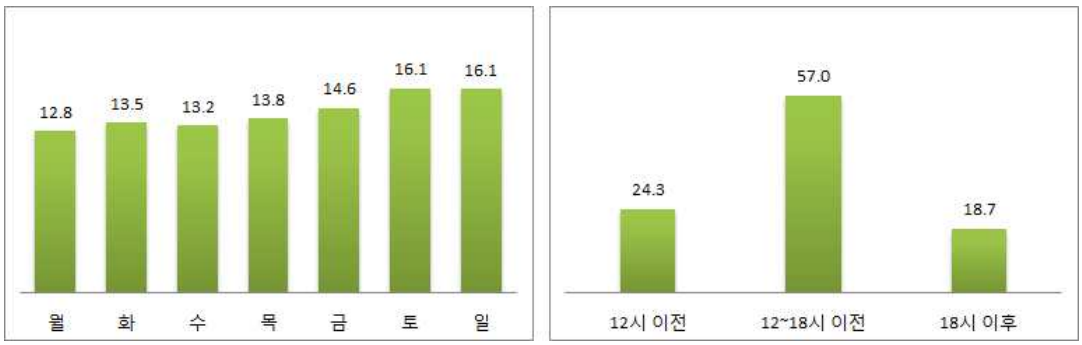
전반적인 실사 진행 상황을 보면, 실사에 돌입하고 3주차인 6월 첫째 주부터 주간 완성 표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실사 시작 시점에는 우선 조사원이 전화로 패널과의 사전접촉 및 면접약속을 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6월에 접어들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7월 중순부터는 단순거절 가구에 대한 재설득이 주로 이뤄졌고, 표본가구의 사정으로 조사 시점이 뒤로 밀린 가구에 대한 조사가 주로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주간 진행 표본수가 급감했으나 패널유지율 제고를 위해 끝까지 실사를 마감하지 않았다.

2.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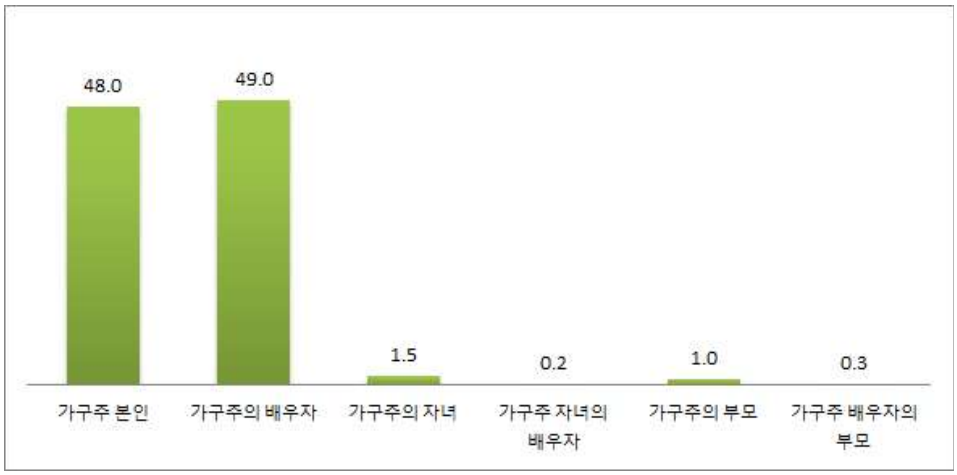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모든 요일이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7.0%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른 아침 시간이나 심야 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주로 낮 시간대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Ⅳ-2] 조사 요일 및 시간대(%)



3. 가구 설문지 응답자 선정

[그림 Ⅳ-3] 가구 설문지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 설문지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한 경우가 전체 표본의 96.5%로 나타나, 4차년도(96.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선정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총 7,3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년도에서 조사했던 가구원 설문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영역은 소득 및 소득활동 해당자가 아니어도 20-30대 기혼 여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구원이면 응답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5차년도에는 제외되면서 4차년도에 비해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가 줄어들었다. 한편, 이 중에서는 실제 소득은 없으나 실사 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가구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소득 가구원 숫자와 조사 성공률은 데이터 클리닝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조사표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55.2%였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4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소득활동 상황과 소득과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조사원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조사표 상에는 대리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소득자 본인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애매한 질문을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가구원이 대신 응답했다고 표기됐다고 해서 조사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해당 가구원이 주로 심야에 귀가하거나, 본 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타가구원으로부터 대리응답을 받기도 하였다.

Ⅴ. 재정패널 표본 특성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가. 표본가구 구분

5차년도 재정패널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표본가구(원표본+분가표본) 수는 4,784개로 1차년도 5,014가구, 2차년도 5,096가구에 비해 표본수가 200~300여개 감소했으나, 4차년도 조사의 표본수인 4,843가구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조사 차수가 진행되면서 패널유지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표집된 4,784개 가구는 표본의 특성에 따라 크게 7가지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유효 표본수가 달라진다. 먼저 1차년도 조사에서 최초 표집된 5,014 가구 중 2차부터 5차까지 연속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3,838개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5개년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표본 집단이다. 그러나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되어 조사완료 된 620가구 중 3차부터 5차까지 모두 조사 성공한 519가구는 4개년도(2차~5차)에 걸치는 분석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4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탈락했다가 5차년도에 복귀한 가구가 있으며, 데이터 결측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또한 2011년 7월 이후 분가를 제외한 성공 분가가구 242개는 분가 시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 유효 표본수가 달라지고, 가중치도 달라진다.

나. 가중치 보정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종단면·횡단면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가중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가중치 적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서 결과 해석을 달리해야한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5년 연속 성공한 원표본 가구에게만 부여가 된다. 본 보고서는 5차년도 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기 때문에 Ⅵ장부터 기술되는 조사 결과 중 횡단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며, 연도별 분석의 경우 각 조사차수의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표 Ⅴ-1> 표본집단과 표본가구 구조

표본가구 구분	표본수	1차	2차	3차	4차	5차
5년 연속 성공 1차 추출가구	**3,838**	O	O	O	O	O
1차, 3차, 4차, 5차 성공 1차 추출가구	42	○	X	○	○	○
1차, 2차, 4차, 5차 성공 1차 추출가구	46	○	○	X	○	○
1차, 2차, 3차, 5차 성공 1차 추출가구	21	○	○	○	X	○
1차, 4차, 5차 성공 최초표본가구	19	○	X	X	○	○
1차, 2차, 5차 성공 최초표본가구	2	○	○	X	X	○
1차, 5차 성공 최초표본가구	6	○	X	X	X	○
4년 연속 성공 2차 추출가구	**519**		O	O	O	O
2차, 4차, 5차 성공 2차 추출가구	2		○	X	○	○
2차, 3차, 5차 성공 2차 추출가구	3		○	○	X	○
2차, 5차 성공 2차 추출가구	0		○	X	X	○
4년 연속 성공 기존 분가가구 (08년 6월 30일 이전)	19		○	○	○	○
2차, 4차, 5차 성공 기존 분가가구 (08년 6월 30일 이전)	0		○	X	○	○
2차, 3차, 5차 성공 기존 분가가구 (08년 6월 30일 이전)	0		○	○	X	○
2차, 5차 성공 기존 분가가구 (08년 6월 30일 이전)	0		○	X	X	○
3년 연속 성공 기존 분가가구 (09년 6월 이전)	12			○	○	○
3차, 5차 성공 기존 분가가구 (09년 6월 이전)	0			○	X	○
4차, 5차 성공 기존 분가가구 (10년 6월 이전)	27				○	○
기존 분가가구(10년 7월 이후)	58					○
신규 분가가구(11년 6월 이전)	30				○	○
신규 분가가구(11년 7월 이후)	42					○

2. 표본 가구의 구성

본 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일반가구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동거인 등의 혈연관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가 73.2%로 절대 다수였으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3.5%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 가구주가 여자인 가구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 Ⅴ-2>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4차년도	77.8	22.8	3.3	23.0	25.6	22.9	25.2
5차년도	73.2	26.8	3.5	22.6	24.5	23.0	26.4

나.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학력은 대학(전문대) 재학/졸업 등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비중이 33.4%로 뒤를 이었다.

<표 Ⅴ-3> 가구주의 학력

단위(%)	미취학 (안받음)	중학교 재학/졸업 이하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대학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4차년도	4.2	19.8	33.5	38.4	4.1
5차년도	4.4	20.1	33.4	38.1	4.0

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가구주 중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1.7%, 임시직 임금 근로자가 7.1%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1.3%로 조사됐다. 재정패널에서는 먼저 직업을 질문하고 2011년 12월말 기준 직업이 무직·퇴직·전업주부·학생이 아닌 경우에만 종사상 지위를 질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표 Ⅴ-4>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구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무직/주부/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4차년도	48.2		7.2	21.4	4.7	0.5	17.9
5차년도	41.7	7.1	6.2	21.3	3.5	0.6	19.6

※ 2011년 조사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가. 가구원 수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정의에 따라 에서 가구는 2011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다른 가구에 사는 기러기 아빠,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이 밖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함께 살게 된 가족은 간단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으로 보지 않았다.

재정패널 표본가구 당 가구원 수는 3명인 경우가 27.4%, 2명인 경우가 24.1%로 나타났고,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 비해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 가구원의 수

단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4차년도	17.5	22.2	24.9	26.5	7.0	1.8
5차년도	20.3	24.1	27.4	20.7	6.0	1.5

나.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약간 더 많았으나,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Ⅴ-6>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4차년도	48.2	51.8	25.4	10.7	17.8	16.7	13.8	15.8
5차년도	47.5	52.5	23.5	10.5	17.9	16.6	14.5	17.0

다. 가구원의 학력

전체 가구원 중 대학(전문대) 재학/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1.8%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학력을 지닌 가구원이 28.8%로 나타났다.

<표 Ⅴ-7> 가구원의 학력

단위(%)	미취학 (안 받음 포함)	중학교 재학/졸업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대학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4차년도	11.8	26.2	28.4	31.1	2.5
5차년도	11.2	25.6	28.8	31.8	2.6

라.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 중 무직/주부/학생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5.7%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23.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무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Ⅴ-8>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무직/주부/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4차년도	25.7		3.6	9.6	2.0	1.6	57.5
5차년도	23.3	4.5	3.1	10.2	1.6	1.5	55.7

※ 2011년 조사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

마. 취업 가구원 수

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54.9%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 두 명의 가구원이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취업자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Ⅴ-9> 취업 가구원 수

단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4차년도	12.6	57.1	26.6	3.3	0.4
5차년도	14.3	54.9	27.0	3.5	0.4

Ⅵ. 가구 설문지 조사결과 요약

가구 설문지는 가구원 현황과 주택·자동차 현황, 연간 소비 지출, 자산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지출 금액은 지출의 특성에 따라 월평균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은 조사시점 기준 작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기술되는 2007년부터 2011년 결과값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 결과값을 의미하며, 보다 정확한 기술을 위해 기준이 되는 조사년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기초분석보고서에 인용한 수치는 조사년도만을 위한 분석에서는 횡단면 가중치, 연도별 분포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평균값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결측된 사례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주택 현황

가. 주택 거주 형태

1) 주택 거주 형태 분포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주택 형태보다 주택 점유 형태나 주택 시가 총액·전월세 보증금을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1인 소유의 독립된 주택이라는 일반적인 개념[11]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였다.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면 점포 주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면적을 구분하는 등의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연도별 주택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70%이상이 아파트나 단독

11)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과 함께 다가구주택과 영업겸용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정의한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건물로 연면적이 660m^2(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점포 용도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부분이 같거나 더 많으면 단독주택으로 간주했다.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순이었다. 특히 2011년도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2007년도(43.6%)대비 3.4%p 증가한 47.0%였으며 다른 거주형태의 변화율은 2%p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 연도별 주택 거주형태(단위: %)

년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오피스텔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기타
2007	43.6	33.1	14.1	3.7	2.9	2.6
2008	44.7	31.9	15.1	3.6	2.9	1.8
2009	45.4	31.4	14.8	2.7	3.1	2.6
2010	46.6	31.9	14.5	2.2	2.9	1.9
2011	47.0	33.4	14.4	2.5	2.5	0.3

나. 거주주택 점유 형태

연도별 거주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과반이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무보증 월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 자가 거주(55.0%)와 전세 거주(22.0%)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각각 0.9p%, 1.4p% 하락한 반면 월세 거주(14.8%)의 경우 1.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2> 연도별 주택 점유형태(단위: %)

년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기타
2007	57.8	22.6	14.2	2.4	4.1
2008	57.1	23.2	13.2	3.2	3.3
2009	55.7	23.8	12.6	2.6	5.3
2010	55.9	23.4	13.1	1.8	5.8
2011	55.0	22.0	14.8	2.0	6.2

다. 거주주택 가격 분포

1) 연도별 거주주택 가격 분포

자가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거주주택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19,000 ~ 20,000만원 초반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가격 평균값은 2011년 19,887만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주택가격의 중앙값을 살펴보면, 2007년 12,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상승한 15,000만원으로 조사되어 거주주택의 시세가 꾸준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표 Ⅵ-3> 연도별 거주주택 시가(단위: %, 만원)

년도	해당가구	거주주택 시가 평균 (중앙값)
2007	57.8	19935.8 (12000)
2008	57.1	18856.5 (12000)
2009	55.7	19425.9 (13000)
2010	55.9	20517.2 (15000)
2011	55.0	19886.5 (15000)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거주주택의 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2011년의 경우 평균 6,428.5만원으로 2007년 대비(5,030.4만원)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결과이다.

보증부 및 무보증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지불하는 월세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 약 26만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20~2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4> 연도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금 현황(단위: %, 만원)

년도	전세·월세 해당가구	전월세 보증금 평균 (중앙값)	월세 해당가구	전월세 월세 평균 (중앙값)
2007	22.6	5030.4 (3000)	15.6	26.4 (24)
2008	23.2	5176.0 (3000)	16.4	26.2 (25)
2009	23.8	5578.3 (3670)	15.2	27.7 (23)
2010	23.4	6281.7 (4000)	14.9	26.4 (22)
2011	22.0	6428.5 (4000)	16.8	25.9 (20)

라.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유무에 대해 물어본 결과 조사가구의 약 15%가 보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보유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해당가구의 과반이 전세로 관리한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보증부 월세, 무상임대, 무보증 월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 보증부 월세의 경우 2008년도 대비(12.5%) 7.5%p 상승한 20.0%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 Ⅵ-5> 연도별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주요 관리 형태 - 중복응답(단위: %)

년도	해당가구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무상임대	기타
2008	15.2	55.3	12.5	3.0	19.2	11.2
2009	15.7	57.8	15.7	2.8	17.9	8.2
2010	15.1	55.2	19.5	1.4	16.7	8.7
2011	14.3	57.6	20.0	1.9	14.1	8.7

마. 주택 구입 및 매각

1) 주택 구입 현황

연도별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5%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도를 기점으로 2010년도 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1년도에 소폭 상승(0.9%p)하였다. 2011년도 주택 구입 평균 가격은 24,847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약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가격 중앙값의 경우 2007~2008년도의 경우 상승하다가 이후 2010년도 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약 5천만원 상승하여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6> 연도별 주택 구입 여부 및 가격(단위: %, 만원)

년도	해당가구	주택구입 가격평균 (중앙값)
2007	4.0	18132.8 (15300)
2008	4.5	19177.7 (17000)
2009	3.6	19935.3 (16400)
2010	2.6	23201.9 (15500)
2011	3.7	24846.8 (20000)

2) 주택 매각 현황

연도별 주택 매각 유무를 살며보면, 평균적으로 조사가구의 2%정도가 주택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 평균 8년(중앙값 6년), 2008년 평균 7년(중앙값 5년), 2009년 10년(중앙값 6년), 2010년 10년(중앙값 7년), 2011년 8년(중앙값 5년)동안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2011년도 주택 매각 평균 가격은 24,697만원으로 2007년도(16,677만원) 대

비 4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각 주택의 최초 매입가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7년도 평균 10,502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57.5% 증가한 16,43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Ⅵ-7> 연도별 주택 매각·매입 여부 및 가격(단위: %, 년, 만원)

년도	해당가구	주택 보유 기간 평균(중앙값)	주택 최초 매입 가격 평균(중앙값)	주택 매각 가격 평균(중앙값)
2007	2.2	7.7 (6)	10502.3 (8300)	16676.9 (12500)
2008	2.5	7.1 (5)	11788.1 (9000)	18394.1 (13000)
2009	2.8	9.5 (6)	12402.4 (10000)	19177.1 (14900)
2010	2.5	9.8 (7)	16034.8 (10500)	21324.3 (13900)
2011	2.2	7.9 (5)	16538.7 (15000)	24697.0 (22000)

바. 종부세 납부 여부 및 금액

종부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조사는 2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3차년도 조사에서 종부세 납부금액에 대한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연도별 종부세 납부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08년도 납부가구는 평균 3.8%인 반면 2009년도부터는 2%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은 0.8%, 2011년은 0.7%가구만이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말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과 1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른 결과로 추측된다.

종부세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납부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80만원(2010년 85.3만원, 2011년 89.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값은 2010년 35만원, 2011년 5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Ⅵ-8> 연도별 종부세 납부 금액(단위: %, 만원)

년도	종부세 납부 여부	납부 금액 평균(중앙값)
2008	3.8	-
2009	1.8	-
2010	0.8	85.3 (35)
2011	0.7	89.1 (50)

사. 재산세 납부 여부 및 금액

2011년도 조사부터 보유 주택 및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가구원 유무와 해당 가구원이 고지 받은 재산세 금액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조사가구의 절반인 53.2% 가구에서 재산세를 납부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구들의 납부 금액의 평균은 28.4만원, 중앙값은 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재산세는 가구 내 재산세 부과 가구원들이 납부한 총 납부금액을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포함한 값이다.

<표 Ⅵ-9> 연도별 재산세 납부 금액(단위: %, 만원)

년도	재산세 납부 여부	납부 금액 평균(중앙값)
2011	53.2	28.4 (15)

2. 자동차 보유 현황

가. 자동차 보유 현황

자동차 보유현황의 경우, 해당 가구원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응답하도록 하였고,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는 없지만,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동차 보유 현황

연도별 가구의 가구원의 자동차 보유 여부의 경우, 모든 차수에서 조사대상 가구의 약 60%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가구 대상으로 보유 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1.2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보유 대수 중앙값 또한 1대로 나타나 자동차를 보유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1대를 소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Ⅵ-10> 연도별 자동차 보유 여부 및 보유 대수(단위:%, 대)

년도	해당가구	평균 보유 대수 (중앙값)
2007	60.7	1.2 (1)
2008	61.9	1.2 (1)
2009	63.8	1.2 (1)
2010	64.3	1.2 (1)
2011	61.7	1.2 (1)

각 연도별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유한 자동차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물어본 결과 10가구 중 9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도 자가용 보유 비율은 97.1%로 2007년(94.4%) 대비 2.7%p 상승하였다. 반면 영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2007년 8.6%에서 점점 하락하는 추세로 2011년에는 2.2%p 하락한 6.4%로 나타났다.

<표 Ⅵ-11> 연도별 자동차 보유 유형 - 중복응답(단위: %)

년도	해당가구		
		자가	영업용
2007	60.7	94.4	8.6
2008	61.9	95.7	7.5
2009	63.8	96.2	7.3
2010	64.3	96.6	6.5
2011	61.7	97.1	6.4

2) 자동차 유지비용

자동차 유지비용을 크게 보험료 지출과 유류비 지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동차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2007년 60.3%, 2008년 61.8%, 2009년 63.7%, 2010년 64.1%, 2011년 61.7%가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보험에 가입한 가구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연간 약70만원(2007년 70만원, 2008년 69만원, 2009년 69만원, 2010년 74만원 2011년 74만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은 모든 해에 걸쳐 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표 Ⅵ-12> 연도별 자동차 보험료 납부 여부 및 연간 납부 금액(단위: 만원,%)

년도	해당가구	평균 금액 (중앙값)
2007	60.3	70.0 (60)
2008	61.8	69.4 (60)
2009	63.7	69.3 (60)
2010	64.1	74.2 (60)
2011	61.7	74.1 (60)

연도별 가구 보유 자동차 유형을 살펴보면 휘발유, 경유, LPG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1년도 자동차 유형별 보유율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 2.3%p(2007년 36.6%, 2011년38.9%), 경유 3.9%p(2007년 18.0%, 2011년 21.9%), LPG 1.5%p(2007년 6.7%, 2011년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자동차 유형별로 월 평균 유류비를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의 경우 월 평균 2007년 26만원(중앙값 20만원), 2008년 26만원(중앙값 20만원), 2009년 25만원(중앙값 20만원), 2010년 26만원(중앙값 20만원), 2011년 26만원(중앙값 20만원)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유 차량의 경우 2007년 28만원(중앙값 25만원), 2008년 33만원(중앙값 20만원), 2009년 32만원(중앙값 25만원), 2010년 36만원(중앙값 30만원), 2011년 37만원(중앙값 25만원)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LPG 차량은 2007년 20만원(중앙값 20만원), 2008년 23만원(중앙값 20만원), 2009년 27만원(중앙값 20만원), 2010년 28만원(중앙값 20만원), 2011년 33만원(중앙값 20만원)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유형별로 유류비 지출에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경유나 LPG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경유나 LPG차량이 업무용도로 사용되어 차량 이용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유류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Ⅵ-13> 연도별 자동차 유형별 월 평균 유류비(단위: %, 만원)

년도	자동차 유형	해당가구	평균 금액 (중앙값)
2007	휘발유	36.6	25.5 (20)
	경유	18.0	27.8 (25)
	LPG	6.7	19.8 (20)
2008	휘발유	39.3	25.5 (20)
	경유	21.2	32.6 (20)
	LPG	8.8	23.3 (20)
2009	휘발유	40.3	24.5 (20)
	경유	22.1	32.1 (25)
	LPG	8.6	27.3 (20)
2010	휘발유	40.2	26.1 (20)
	경유	22.7	35.8 (30)
	LPG	8.5	27.9 (20)
2011	휘발유	38.9	26.0 (20)
	경유	21.9	37.1 (25)
	LPG	8.2	33.3 (20)

3. 가구 소득 현황

본 절에서는 세부항목의 합계 경상소득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소득 분포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소득을 나누어 각 구간별 평균 소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외 1~5차년도 가구 소득 동태 변화 분석을 통해 소득 분위 간 이동을 추적하였다. 또한 소득차이에 따른 세부 소득항목별 비율을 비교하고자 소득분위별로 전체 소득 대비 각 세부항목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 본 조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거주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과대표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중치 보정 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

가. 가구 소득 구성

재정패널조사의 소득 구성은 경상 소득의 개념으로 가구 소득 중 정기적인 소득과 재현 가능성이 있는 소득으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크게 조사대상 가구의 해당 가구원의 소득의 합과 가구 소득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원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과 사회보험 보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은 연금 및 보험성 소득을 포함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크게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사적 이전소득에는 타가구 이전 소득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포함하였으며,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고령층 정부지원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보훈수당, 자녀양육지원금을 포함하였다. 또한 소득 산출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표 Ⅵ-14> 가구 소득 구성

가구원소득	근로 및 사업, 재산 소득		근로소득
			순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 및 보험, 기타 소득		사회보험보조금
			퇴직연금
			연금신탁·펀드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타
가구소득	이전소득	사적	타가구 이전 소득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
		공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지원현금소득
			노인장기요양특별급여

나. 연도별 가구 경상소득

연도별 가구 경상소득을 비교 분석하고자 <표 Ⅵ-14> 가구 소득 구성항목을 합한 전체 가구 대상 연간 가구 경상소득의 총합을 산출하여 평균과 중위 소득을 비교하였다. 또한 산출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소득을 나누어 각 구간별 평균 소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산출된 값은 균등화지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각 소득 항목 중 하나라도 모름·무응답이 있을 경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는 0으로 처리하여 조사 대상 가구 전체의 경상 소득을 산출하였다. 그 외에 소득분위를 1~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경상소득 평균 및 중위소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 연간 경상소득의 경우 평균 소득은 2007년 2,827.6만원, 2008년 1,895.9만원, 2009년 1,986.2만원, 2010년 2,197.0만원, 2011년 2,241.2만원 이었으며, 중위소득의 경우 2007년 2,400만원, 2008년 1,546.7만원, 2009년 1,682.6만원, 2010년 1,800만원, 2011년 1,887.9만원이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평균 소득은 1분위 537.2만원, 2분위 1,232.2만원, 3분위 1,889.5만원, 4분위 2,667.7만원, 5분위 4,862.9만원, 중위소득의 경우 1분위 552만원, 2분위 1,240만원, 3분위 1,887.9만원, 4분위 2,620만원, 5분위 4,218만원으로 소득 분위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Ⅵ-15> 연도별 전체 및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 및 중위소득(단위: 만원)

년도	가구 연간 소득 평균 (중위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2827.6 (2400)	530.5 (500)	1459.9 (1451.0)	2322.2 (2400)	3396.7 (3394.1)	6386.8 (5480)
2008	1895.9 (1546.7)	419.4 (440)	1003.2 (1004.1)	1565.1 (1546.7)	2291.2 (2271.5)	4202.1 (3700)
2009	1986.2 (1682.6)	445.2 (466.7)	1075.8 (1068)	1670.4 (1680)	2370.1 (2366.0)	4351.9 (3783)
2010	2197.0 (1800)	535.7 (551.6)	1199.8 (1200)	1823.4 (1800)	2593.5 (2545.6)	4833.2 (4234)
2011	2241.2 (1887.9)	537.2 (552)	1232.2 (1240)	1889.5 (1887.9)	2667.7 (2620)	4862.9 (4218)

다. 연도별 소득 분위 이동 현황

2007년을 기준으로 2008년 가구 소득 분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1분위 가구의 66.0%가 2008년도 1분위, 23.9%가 2008년도에 2분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분위 가구의 경우는 2008년도 2분위 39.7%, 3분위 25.9%, 1분위 20.5% 4분위 11.5%로 나타났으며 5분위 이동은 2.4%로 가장 낮았다. 2007년 3분위 해당 가구의 경우, 2008년 기준 3분위 35.3%, 4분위 24.8%, 2분위 22.8%, 5분위 10.1%, 1분위 7.0%였다. 2007년 4분위 가구의 경우 2008년 4분위 40.0%, 3분위 23.7%, 5분위 22.0% 순이었다. 또한 2007년 5분위의 경우 2008년 5분위 64.2%. 4분위 22.0%, 3분위 8.0%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2007년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과반이 2008년에도 1분위 5분위에 머물렀던 반면 2007년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우 약 35~39% 정도만이 같은 소득 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6> 2007-2008년 가구 소득 분위 이동 현황(단위: %)

년도/소득분위		200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1분위	66.0	23.9	6.9	2.0	1.2
	2분위	20.5	39.7	25.9	11.5	2.4
	3분위	7.0	22.8	35.3	24.8	10.1
	4분위	4.0	10.4	23.7	40.0	22.0
	5분위	2.4	3.4	8.0	22.0	64.2

2008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도 가구소득 분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모두 10가구 중 약 7가구가 2009년에도 각각 1분위 5분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08년 2분위 가구의 경우, 2009년 2분위 49.0%, 1분위 21.5%, 3분위 21.6% 순이었다. 2008년 3분위 가구의 경우 약 46.5%가 2009년에도 3분위였으며 21.8%는 2분위, 21.5%는 4분위였다. 또한 1분위와 5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약1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8년 4분위 가구의 경우 과반이 2009년에도 4분위 가구였다.

<표 Ⅵ-17> 2008-2009년 가구 소득 분위 이동 현황(단위: %)

년도/소득분위		2009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1분위	68.5	22.6	5.8	2.7	0.4
	2분위	21.5	49.0	21.6	6.0	1.9
	3분위	6.2	21.8	46.5	21.5	4.1
	4분위	3.4	4.7	21.5	51.7	18.7
	5분위	1.3	2.2	4.0	17.9	74.6

2009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도 가구소득 분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소득 분위 변동이 없는 가구는 1분위 69.4%, 2분위 48.6%, 3분위 43.9%, 4분위 48.6%, 5분위 71.7%로 나타나 1분위와 5분위 가구에서 이동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 분위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한 분위씩 감소 또는 증가한 가구 비율이 약 20%정도로 조사되었다.

<표 Ⅵ-18> 2009-2010년 가구 소득 분위 이동 현황(단위: %)

년도/소득분위		201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9	1분위	69.4	20.7	5.9	2.4	1.7
	2분위	19.1	48.6	22.7	6.9	2.7
	3분위	7.2	21.5	43.9	22.1	5.2
	4분위	3.2	7.0	22.5	48.6	18.6
	5분위	1.6	1.7	4.9	20.2	71.7

2010년도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11년 가구소득 분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1분위, 5분위 가구의 70%이상이 2011년에도 1분위 5분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10년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의 경우 2011년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무른 가구 비율은 각각 50.1%, 47.1%, 54.1%로 약 절반정도의 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1분위, 5분위의 경우 소득분위 이동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의 경우에 다른 분위로 이동하는 가구가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대부분이 한 분위 아래 또는 위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Ⅵ-19> 2010-2011년 가구 소득 분위 이동 현황(단위: %)

년도/소득분위		201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0	1분위	70.7	19.7	5.7	2.7	1.2
	2분위	18.9	50.1	21.5	6.9	2.7
	3분위	4.4	20.6	47.1	22.4	5.5
	4분위	3.3	6.5	20.2	54.1	15.9
	5분위	2.6	2.9	5.6	14.1	74.9

라. 2011년 소득 분위별 가구 소득 항목별 현황

2011년 전체 가구 경상소득 대비 소득의 세부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의 약 78%가량을 차지하고, 그 외 가구원 소득이나 이전소득의 비율의 차지비율은 약 22%이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전체의 57.2%를 차지하였고, (순)사업소득 20.7%, 사적이전소득 7.6%, 공적이전소득 7.1%를 차지하였다.

가구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3분위 이상의 가구(3분위: 65.9%, 4분위: 70.4%, 5분위: 72.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22.5%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2분위 이상 가구의 경우 10%미만

인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현금소득이 이전소득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1분위 가구와 2분위 이상 가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1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분위 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이 5%미만으로 매우 낮았던 반면 1분위 가구의 경우 26.6%로 다른 소득분위 가구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Ⅵ-20> 가구소득 분위별 소득 세부항목 비율(단위: %)

항목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개인소득	근로소득	57.2	20.7	56.1	65.9	70.4	72.5
	(순)사업소득	20.7	19.7	21.4	21.6	20.8	20.2
	부동산 임대소득	2.6	2.8	2.8	2.4	2.3	2.7
	이자 및 배당소득	0.7	1.3	0.7	0.4	0.4	0.5
	기타소득	4.1	6.4	4.2	4.1	2.8	2.9
가구소득	사적 이전소득	7.6	22.5	9.6	3.1	2.1	0.7
	공적 이전소득	7.1	26.6	5.1	2.5	1.2	0.5

4. 가계 지출 현황

본 절에서는 가구의 지출을 크게 주거비, 식료품 및 외식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의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과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가구, 의류, 잡화, 화장품 구입비 및 여행·스포츠 레저, 보육 및 교육, 의료, 혼인·장례·이사, 기부,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지출한 연간 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 월 평균 소비규모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경상소득, 저축액과 비교하여 가구의 월단위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간 지출에서 세부 항목별 지출의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가구 특성별로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다만 이 경우 지출 항목별 비교를 위하여 월간 비용을 연간으로 재계산하고, 천원 단위로 조사된 항목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만원 단위로 환산하였다. 해당 가구의 평균을 구할 경우 각 항목에 지출이 없는 경우 0원,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 처리하여 산출하였다.

가. 2011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분포 비교

2011년 가계소비 지출 현황 조사에서 단답식으로 조사한 월평균 소비지출과 각 세부항목별 지출의 합계로 추정한 총 소비지출의 가구 월간 소비액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2011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분포에서 월300만원 미만에 속해 있는 가구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1>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비교(단위: %)

금액	단답식 응답 소비지출	세부항목합계 총소비 지출
100만원미만	24.4	27.1
100-200만원 미만	30.8	35.4
200-300만원 미만	24.4	21.1
300-400만원 미만	12.3	9.7
400-500만원 미만	5.1	3.3
500만원 이상	3.0	3.3

나. 연도별 가구 평균 소비 지출 및 저축 변화

가구 월 평균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과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고자 단답형 응답으로 산출된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 값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가구 월평균 지출금액은 약 180~190만원 정도였으며 저축의 경우 약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0년도 소득대비 지출 금액의 비율은 72.5%로 전년대비 4.1%p 증가하였으며, 저축의 경우는 0.2%p 감소한 13.0%로 작년과 비슷

했다. 산출된 결과는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Ⅵ-22> 연도별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 및 저축(단위: 만원, %)

년도	월 평균 지출 금액		월 평균 저축금액	
	소득대비비율	평균 (중앙값)	소득대비비율	평균 (중앙값)
2010	68.4	183.1 (150)	13.2	53.2 (30)
2011	72.5	191.3 (170)	13.0	49.8 (30)

다. 2011년 가구 연간 지출 항목 현황

2011년 가구 연간 총 지출 중 세부 항목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식료 및 외식비가 32.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주거비(11.6%), 보육·교육비(9.9%), 의류잡화 및 장신구· 화장품 및 이·미용비(8.8%)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류비·담배 구입비(2.4%), 가전제품·통신장비·가구구입비(2.0%), 여행·스포츠 레저비(2.2%), 혼인·장례·이사비(1.9%), 기부금(1.7%), 가사 도우미 서비스비(0.1%)는 그 비중이 3%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표 Ⅵ-23> 가계 연간 지출 현황(단위: 만원, %)

항목	평균 지출 금액 (중앙값)	총 지출 대비 비율
주거비	205.9 (180)	11.6
식품료 및 외식비	672.8 (600)	32.0
주류비·담배구입비	50.4 (15.6)	2.4
교통비	135.1 (96)	6.2
통신비	176.0 (165.6)	8.4
문화생활비	105.2 (78)	6.4
가전제품·통신장비·가구구입비	54.7 (0)	2.0

의류잡화 및 장신구·화장품 및 이미용비	206.8 (150)	8.8
여행·스포츠레저비	67.8 (0)	2.2
보육·교육비	349.1 (0)	9.9
보건의료비	128.9 (47)	6.3
혼인·장례·이사비	109.8 (0)	1.9
기부금	48.2 (0)	1.7
가사 도우미 서비스비	3.7 (0)	0.1

라. 2011년 가구 특성별 연간 지출 현황

1) 가구 소득 분위별 연간 지출 현황

가구 특성별로 전체지출 대비 세부 지출 항목 비율을 살펴보면 주거비의 경우 소득이 낮은 1분위(16.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육·교육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총 지출 대비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 1분위의 경우 4.3%로 소득 5분위(14.8%)가구와 10.5%p 차이로 의류잡화 및 장신구 구입, 화장품 및 이·미용비 지출의 격차(4.8%p)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Ⅵ-24> 2011년 가구 소득 분위별 가계 연간 지출 현황(단위: %)

항목	가구소득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거비	16.9	12.6	10.6	9.7	8.1
식품료 및 외식비	33.0	33.2	32.7	31.1	30.0
주류비·담배구입비	1.8	2.8	2.8	2.6	2.1
교통비	5.9	6.8	6.5	6.4	5.6
통신비	7.4	9.4	9.1	8.9	7.4
문화생활비	10.6	6.3	5.7	5.0	4.3
가전제품·통신장비·가구구입비	1.0	1.9	2.1	2.6	2.4

의류잡화 및 장신구·화장품 및 이미용비	5.7	8.2	9.6	10.0	10.5
여행·스포츠레저비	0.7	1.3	2.0	2.7	4.5
보육·교육비	4.3	8.3	10.6	11.8	14.8
보건의료비	9.9	6.4	5.3	5.1	4.7
혼인·장례·이사비	1.7	1.5	1.4	2.3	2.5
기부금	1.0	1.3	1.4	1.8	3.0
가사 도우미 서비스비	0.0	0.0	0.1	0.1	0.2

2) 가구원 수 별 연간 지출 현황

가구원 수 별로 살펴보면 주거, 문화생활비, 보육·교육비에서 차이가 났다. 주거비의 경우 1인 가구가 총 지출의 15.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총 지출의 10%미만을 지출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가구원수별로 지출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보육·교육비로 4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전체 지출의 22.3%를 차지하는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0.6%, 2인 가구의 경우 2.1%로 매우 낮았다.

<표 Ⅵ-25> 가구원 수 별 가계 연간 지출 현황 (단위: %)

항목	가구원수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주거비	15.3	14.0	9.4	8.4
식품료 및 외식비	33.6	34.2	30.8	28.2
주류비·담배구입비	2.5	2.5	2.4	2.3
교통비	6.3	6.5	6.1	5.7
통신비	7.1	8.0	9.1	9.0
문화생활비	11.0	6.5	4.8	4.0

가전제품·통신장비·가구구입비	1.9	1.7	2.1	2.2
의류잡화 및 장신구·화장품 및 이미용비	9.2	8.6	8.9	7.8
여행·스포츠레저비	2.0	2.1	2.4	1.8
보육·교육비	0.6	2.1	16.0	22.3
보건의료비	7.4	9.2	4.6	4.7
혼인·장례·이사비	2.0	2.4	1.7	1.3
기부금	1.1	2.1	1.7	2.1
가사 도우미 서비스비	0.0	0.1	0.1	0.2

5.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가구의 이전지출과 이전 소득을 파악하고자 경조사 지출 및 소득과 타가구 이전 지출 및 소득,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경조사 지출 및 소득의 경우 해당 가구의 비율과 평균 지출·소득 금액 및 분포를 통해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모든 지출·소득의 경우 해당 가구만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 처리 하여 분석하였다.

가. 경조사 지출 및 소득

경조사 지출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 10가중 약 8가구가 경조사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 지출이 있었던 가구의 연간 지출한 평균 금액은 약 80~90만원 이었으며, 중위값은 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26> 연도별 연간 경조사 지출 금액 평균 및 분포(단위: %, 만원)

년도	해당 가구	연간 소득 금액 평균(중앙값)
2007	86.3	90.1 (50)

2008	88.8	81.7 (50)
2009	89.0	84.6 (50)
2010	87.4	86.7 (50)
2011	87.0	85.8 (50)

경조사비용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 8%미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조사 소득이 있는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에 비해 경조사 소득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 연간 소득 금액은 평균 1,020만원으로 2007년 대비 51.8%증가하였다. 중위 값 또한 2007년 300만원에서 2011년 70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표 Ⅵ-27> 연도별 연간 경조사 소득 금액 평균 및 분포(단위: %, 만원)

년도	해당 가구	연간 소득 금액 평균(중앙값)
2007	7.5	671.7 (300)
2008	7.8	598.6 (300)
2009	7.0	807.4 (500)
2010	5.7	989.9 (500)
2011	4.8	1019.9 (700)

나. 타 가구 이전 지출 및 소득

연도별 타가구 이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가구의 약 30%가 타 가구에게 용돈 또는 생활비, 학비 지원등의 용도로 지급한 급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가구 이전 지출 금액의 평균값은 약 300만원(중앙값 200만원 이하)으로 조사되었다. 타가구 이전 소득의 경우 조사 가구의 약 20% 이전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소득액은 평균 300~400만원 수준으로 이전 지출보다 약간 높은 수

준이다. 여기서 1~2차년도 가구 내 지출 및 소득은 용돈, 학비 등의 목적을 포함하나 3차년도 이후 금전이나 재산 등의 목적으로 지출 및 소득이 일어난 경우, 즉 용돈과 학비를 제외하여 조사하였음을 유의해야한다.

<표 Ⅵ-28> 연도별 연간 타가구 이전 지출 및 소득 현황(단위: %, 만원)

년도/항목		해당 가구	연간 총액 평균(중앙값)
2007	타가구 이전 지출	27.8	458.6 (200)
	타가구 이전 소득	16.2	504.8 (300)
2008	타가구 이전 지출	39.6	285.9 (120)
	타가구 이전 소득	29.8	351.8 (135)
2009	타가구 이전 지출	37.1	272.6 (140)
	타가구 이전 소득	25.9	374.0 (200)
2010	타가구 이전 지출	34.4	325.2 (180)
	타가구 이전 소득	25.3	433.4 (200)
2011	타가구 이전 지출	34.3	338.7 (160)
	타가구 이전 소득	25.0	372.1 (200)

6. 복지현황

재정패널조사는 국민들의 복지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기초보장급여 수급 현황,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자녀양육 지원금, 기타 정부 지원금 수급 및 현물지원 현황과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내용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가구의 수급 금액을 비교하고 2011년 신설된 의료급여 수급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의료급여 대상 가구 및 가구원수, 병원 방문 횟수에 대해 파악하였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경우 수급자를 가구원과 비 가구원으로 나누어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녀양육 지원금에 관해서는 각 세부항목별 지원여부와 연간 수급 총액을 산출하여 지원금의 세부 내용에 따른 수금액을 비교하였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1차년도부터 조사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우 가구원 수 당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소득 금액의 경우 매년 달라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4.4%, 2008년 4.1%, 2009년 4.4%, 2010년 4.4%, 2011년 4.3%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 가구 비율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평균 금액은 약 417.3만원(중앙값 38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대비 7.5% 상승한 수준이다.

<표 Ⅵ-29>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연간 수급 총액(단위: %, 만원)

년도	해당 가구	수급총액 평균 (중앙값)
2007	4.4	388.2 (368)
2008	4.1	406.9 (360)
2009	4.4	396.8 (360)
2010	4.4	401.7 (360)
2011	4.3	417.3 (384)

2) 의료급여 수급 현황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로 대상자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본 조사에서는 2011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가 속한 가구와, 대상 가구원 수, 연간 병원 방문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의료급여 수급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6%로 가구내 약 1.7명(중앙값 1명)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병원 방문 횟수의 경우 평균 33.9회(중앙값 12회)가량 방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Ⅵ-30> 2011년 의료급여 수급 대상 가구원 수 및 연간 병원 방문 횟수(단위: %, 명, 번)

년도	해당 가구	가구원 수 평균 (중앙값)	방문 횟수 평균 (중앙값)
2011	5.6	1.7 (1)	33.9 (12)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경우 2010년부터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가구원 및 비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약 1%로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해당 가구의 수급자가 가구원인 경우는 2010년 86.6%, 2011년 91.7%, 비 가구원의 경우 19.3%, 2011년 12.2%이었다.

<표 Ⅵ-31>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현황 - 중복응답(단위: %)

년도	해당 가구	가구원	비 가구원
2010	1.0	86.6	19.3
2011	1.0	91.7	12.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형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받는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100% 재가급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시설급여는 2010년 25.4%, 2011년 25.0%인 것으로 조사되어 재가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서비스를 받는 비 가구원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64.3%가 시설 급여, 35.7%거 재가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2>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유형별 수급현황- 중복응답(단위: %)

년도	가구원			비 가구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
2010	100.0	25.4	2.2	29.2	70.7	0.0
2011	100.0	25.0	0.0	35.7	64.3	0.0

다.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원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는 2차년도(2008년 대상)부터 진행하여왔으나 지원받는 종류에 대해서는 4차년도(2010년 대상) 조사부터 시행하였다. 2011년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전체 가구는 4.6%로, 2008년, 2009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세부 수급 형태를 살펴보면, 보육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전체 가구 중 4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급식비 26.7%, 교육비 2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출산 축하금, 다자녀 지원금 및 기타 서비스의 경우는 1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Ⅵ-33> 연도별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현황 - 중복응답(단위: %

년도	해당 가구	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출산 축하금	다자녀지원금	기타
2008	4.4	-	-	-	-	-	-

2009	4.1	-	-	-	-	-	-
2010	4.5	47.6	25.2	24.3	3.8	5.0	2.4
2011	4.6	49.9	21.6	26.7	4.7	2.5	5.6

라. 기타 정부 지원금 및 현물 수급 현황

기타 정부 지원금 및 현물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부 지원금을 기초노령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보훈수당, 기타 정부 지원현금, 기타 정부지원 현물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2010년 16.5%, 2011년 17.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지원금을 수급 받은 가구는 전체응답가구의 2% 미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수급대상 가구 비율의 변화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Ⅵ-34> 연도별 기타 정부 지원금 수급 현황 - 중복응답(단위: %)

년도	기초노령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보훈수당	기타정부 지원현금	기타 정부지원 현물
2010	16.5	1.8	1.3	1.7	0.7	-
2011	17.7	1.8	1.6	1.6	0.5	1.0

7. 자산 및 부채

재정패널조사는 조사대상가구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고자 조사년도 연말 기준으로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 및 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마련 펀드,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 등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의 보유주택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기타자산은 골프나, 콘도등의

회원권과 농기계 및 가축, 선박 및 건설중장비, 그 외 기타자산을 포함하였다. 여기서 금융자산의 총 금액은 납입 및 적립 금액 원금이 아닌 해당년도 기준 평가액(이자나 손실 반영)을 의미한다. 또한 질병, 상해, 생명 등 보장성 보험은 금융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물, 회원권, 기타 자산의 경우, 구입당시의 금액이 아닌 조사년도 말 시점 평가금액임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연도별 가구의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부채를 고려한 순 자산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기타자산, 부채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소득분위별로 세부자산의 구성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2011년 조사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가. 연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도별로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고자 금융자산,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합을 총 자산으로 정의하고 부채를 제외하여 순 자산을 산출하였다. 만약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총 금액을 0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계산하였고, 세부 자산 항목 중 하나라도 모름·무응답일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자산의 비율이 각각 약 11~14%, 85~88%, 0.7~1%대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산의 연말 기준 평가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약 2,300만원 수준의 규모를 보였으며, 2010년 약 3,000만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 2,900만원대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자산에서도 2007년 약 19,000만원 수준에서 2010년까지 증가하고, 2010년과 2011년 20,000만원 이상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1차조사시점인 2007년의 보유 평가액(247.1만원)이 가장 높았다. 부채의 규모는 2007년 3,419만원, 2008년 3,720만원, 2009년 3,468만원, 2010년 3,993만원 수준이며, 2011년에는 3,944만원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년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순자산 규모는 부동산 자산의 평가액이 가장 높았던 2010년(부동산 자산 21,249만원)에 20,49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1년에는 3,71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Ⅵ-35> 연도별 자산 및 부채 현황(단위: 만원, %)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중앙값)	비율	평균 (중앙값)	비율	평균 (중앙값)	비율	평균 (중앙값)	비율	평균 (중앙값)	비율
금융자산	2319.1 (500)	11.1	2358.9 (700)	11.2	2571.1 (700)	12.2	3048.9 (1000)	12.5	2936.0 (1000)	14.1
부동산	18333.4 (8000)	87.7	18553.8 (9000)	88.0	18395.5 (9000)	87.1	21249.3 (10000)	86.8	20251.6 (10000)	85.0
기타자산	247.1 (0)	1.2	165.6 (0)	0.8	145.0 (0)	0.7	186.7 (0)	0.8	179.0 (0)	0.9
총자산	20899.6 (10000)	100.0	21078.3 (10300)	100.0	21111.7 (10600)	100.0	24484.9 (12600)	100.0	20770.8 (11050)	100.0
부채	3418.6 (0)	16.4	3719.6 (200)	17.6	3468.1 (0)	16.4	3993.0 (0)	16.3	3943.7 (0)	19.0
순자산	17481.0 (8000)	83.6	17358.7 (8400)	82.4	17643.6 (8820)	83.6	20491.9 (10500)	83.7	16827.1 (9232)	81.0

나. 소득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 분위별로 세부 자산 및 부채 분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각 세부항목별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1) 금융 자산 현황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금융자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 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기타, 주택마련 저축 및 펀드로 구분하여 보유여부와 총 금액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총 금액은 납입 및 적립 원금이 아닌 조사년도 기준 평가액을 의미한다. 또한 저축성 및 연금성 보험이나 은행 신탁 등은 평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적립한 원금을 기준으로 조사 하였음을 유의해야한다.

금융자산에서 각 세부항목별 자산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이 61.7%로 가장 많았고, 저축성 및 연금성 보험(16.7%), 주식(8.6%), 펀드(6.6%) 순이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예적금 비율은 1분위(76.%), 2분위(71.4%)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축성 및 연금성 보험과 주식의 경우, 5분위가구 소득의 29.1%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36> 2011년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현황(단위: 만원, %)

소득분위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연금성 보험	빌려준돈	기타	주택마련 저축/펀드
전체	61.7	6.6	0.6	8.6	16.7	4.3	0.8	0.7
1분위	76.7	1.9	0.0	2.0	10.0	6.9	1.9	0.6
2분위	71.4	5.2	0.6	3.3	15.2	2.9	0.6	0.8
3분위	68.0	4.5	1.2	5.5	17.5	2.3	0.4	0.6
4분위	63.5	6.6	0.0	7.5	18.4	2.3	0.8	0.9
5분위	54.8	8.1	0.8	12.1	17.0	5.6	0.8	0.7

2) 부동산 및 기타자산 현황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거주주택과 비 거주주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외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 기타자산으로 나누어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중, 각 세부 자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때 초중고생 및 대학생(미혼)등이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은 거주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포함하였다. 또한 주택, 토지, 건물, 회원권, 기타 자산의 경우 구입 당시 금액이 아니라 조사년도 말 시점의 평가 금액을 반영하였다. 그 외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는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대비 세부 항목별 자산 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주택(53.2%)이었으며, 그 다음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18.1%)이었다. 그 외 주택 이외 보유부동산(13.3%), 거주주택 전월세 보증금(11.7%)순 이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5분위 가구에서 다른 분위 가구보다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이 부동산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0%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반대로 1분위 가구에서는 총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1.9%로 다른 소득 분위 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였다.

<표 Ⅵ-37> 2011년 소득 분위별 부동산 현황(단위: 만원, %)

소득분위	거주주택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비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주택이외 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	기타자산
전체	53.2	11.7	1.9	0.9	18.1	13.3	0.9
1분위	61.9	9.5	0.5	0.8	11.4	15.3	0.6
2분위	58.9	13.9	1.0	1.2	10.9	13.5	0.6
3분위	55.1	12.0	1.7	0.4	15.7	13.6	1.3
4분위	55.7	13.6	1.7	0.6	17.4	10.3	0.6
5분위	48.1	10.5	2.7	1.3	23.0	13.6	0.8

3) 부채현황

부채의 경우 조사년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사업 및 영업을 위해 빌린 돈도 명의가 개인일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그 외 기타 부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총 대출금은 조사년도 말까지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그 다음 해부터 갚아 나가야 할 대출금 잔액으로 정의하였다.

총 부채대비 각 세부 항목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보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37.8%)과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36.5%)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금 및 임대 보증금에서 소득분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금융기관 대출은 소득이 낮은 1분위(20.1%), 2분위(27.8%), 3분위(21.7%)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4분위(18.2%) 5분위(15.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전세 및 임대 보증금의 경우 소득이 높은 4분위(36.6%), 5분위(41.3%)에서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표 Ⅵ-38> 2011년 소득 분위별 부채 현황(단위: %)

소득분위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전세금, 임대보증금	기타
전체	3.8	0.8	37.8	19.0	0.7	36.5	1.4
1분위	4.8	1.6	36.7	20.1	1.1	33.3	2.4
2분위	3.6	1.3	31.4	27.8	1.0	31.2	3.6
3분위	5.9	1.4	39.5	21.7	0.8	29.6	1.2
4분위	3.3	0.6	39.2	18.2	0.7	36.6	1.5
5분위	3.1	0.4	38.1	15.8	0.6	41.3	0.7

8.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2차년도 조사부터 기타 정부 환급금 및 보조금 수급 현황에 대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연도별 정부정책에 따라 환급금 및 보조금의 형태도 차이가 발생하여 조사표의 구조도 변화가 있었다.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2차년도에서는 유가환급금만을 조사하였으며, 3차년도에서는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유가보조금 등을 조사하였다. 4차년도에는 유가환급금을 제외한 기타 정부 환급금 및 보조금을 조사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효과를 알고자 3차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수령 후 근로의욕변화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4차년도 부터는 근로시간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근로장려금 수령여부와 금액분포, 연말정산 환금급, 종합소득세 환급금, 유가보조금 수령 현황 및 사용용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부부의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지난해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정부 보조금이다. 재정패널조사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현황, 수급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령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 금액과 사용용도, 장려금액 만족도 및 장려금 지급절차에 대한 의견,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수령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1%(2009년 1.2%, 2010년 1.1%, 2011년 0.8%)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의 장려금 평균 수령액은 2009년 87만원(중앙값 91만원), 2010년 86만원(90

만원), 2011년 86만원(중앙값 90만원)이였다.

<표 Ⅵ-39> 연도별 근로장려금 현황(단위: %)

년도	해당가구 비율	평균 금액 (중앙값)
2009	1.2	86.6 (91)
2010	1.1	86.3 (90)
2011	0.8	86.4 (90)

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현황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연도에 환급받은 연말정산액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수령한 연말정산환급금액 및 사용용도, 환급금액 만족도, 환급금 지급 절차 편의성에 대해 조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도별 환급금 수령여부 및 금액, 사용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약 23% 이상이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수령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은 23.1%,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26.0%와 26.2%로 2009년 이후로 약 3.0%p 상승하였다. 수령가구들의 환급금 평균금액은 2009년에 가장 높았고, 이후 줄어들어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약 6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79.4만원(50만원), 2011년 68.2만원(34만원), 2012년 68.1만원(4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도별 차이는 연도별로 연말정산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Ⅵ-40> 연도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단위: 만원, %)

년도	해당가구 비율	평균 금액 (중앙값)
2009	23.1	79.4 (50)
2010	26.0	68.2 (34)
2011	26.2	68.1 (40)

2) 2011 연말정산 환급금 사용 용도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사용용도의 경우, 환급금 수령 가구를 대상으로 크게 소비지출, 저출, 가계부채상환(카드빚 포함), 기타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소비지출의 경우는 주거비, 교통비, 내구재 구입비, 식료품비, 기타 경조사 부조금, 공공기관관련 수수료, 미용비 등의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령액의 대부분이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이나 가계부채상환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10%미만으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수령금액별로 살펴보면 25만원 수령가구 10가구 중 9가구가 소비지출에 사용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100만원 이상 수령가구 중 13.4%가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채 상환도 7.2%로 높게 나타나 수령금액에 따라서 사용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41>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사용용도 - 중복응답(단위:%)

		소비지출	저축	가계부채상환	기타
전체		83.9	6.8	3.5	7.0
수령 금액	25만원 미만	91.0	2.1	1.4	5.5
	25~50만원 미만	88.4	5.9	2.3	4.9
	50~100만원 미만	82.5	9.7	3.1	6.8
	100만원 이상	72.1	13.4	7.2	9.5

	모름/무응답	61.2	3.5	13.6	24.0

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현황

재정패널 조사는 3차년도(2009년 대상) 조사부터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 후, 자진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돌려받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 여부와, 금액, 사용용도, 만족도 및 지급절차 편의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가구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은 가구원 유무와 해당 가구원이 지급받은 금액의 총합을 가구단위로 산출하여 그 평균 금액과 환급금액에 따라 사용용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1) 연도별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2009년 1.6%, 2010년 2.6%, 2011년 2.1% 매우 적었다. 수령금액은 2009년 평균 41.5만원인 반면 2010년 이후로는 60만원대로 나타났다.

<표 Ⅵ-42> 연도별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단위: 만원, %)

년도	해당가구 비율	평균 금액 (중앙값)
2009	1.6	41.5 (29)
2010	2.6	62.0 (46)
2011	2.1	60.8 (50)

2) 2011 종합소득세 환급금 사용 용도

2011년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수령액의 대부분을 소비지출(80.2%)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저축 및 가계부채 상환은 각각 8.1%,

1.2%로 나타나 매우 적었다. 수령액에 따른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거비, 교통비, 내구재 구입비, 식료품비와 같은 소비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이 많을수록 저축에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VI-43> 2011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사용용도 - 중복응답(단위:%)

		소비지출	저축	가계부채상환	기타
전체		80.2	8.1	1.2	10.6
수령 금액	25만원 미만	76.9	4.5	0.0	18.6
	25~50만원 미만	100.0	0.0	0.0	0.0
	50~100만원 미만	82.1	17.9	0.0	0.0
	100만원 이상	83.1	10.8	0.0	6.1
	모름/무응답	39.6	11.7	10.6	38.0

라. 유가보조금

3차년도(2009년 대상) 조사부터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수령현황을 파악하고자 가구 내 운수업계에 종사한 가구원이 속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한 해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금액 및 사용용도, 보조금액 만족도 및 지급절차 편의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1) 연도별 유가 보조금 수령 여부 및 금액

조사대상 가구 중 해당 연도 운수업계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2009년 2.2%, 2010년 1.9%, 2011년 1.7%로 나타났다. 이 가구 중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원이 속한 가구는 2009년 70.5%, 2010년 79.9%, 2011년 78.5%로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09년 300만원(중앙값 120만원), 2010년 371만원(중앙값 240만원), 2011년 407만원(중앙값 29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Ⅵ-44> 연도별 유가 보조금 수령 여부 및 금액(단위: 만원, %)

년도	운수업계 종사자 가구원 유무	유가 보조금 수령 가구원 유무	평균 금액 (중앙값)
2009	2.2	70.5	300.3 (120)
2010	1.9	79.9	370.5 (240)
2011	1.7	78.5	407.1 (290)

2) 2011 유가보조금 사용 용도

유가보조금의 사용용도 또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마찬가지고 소비지출(71.7%)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기타(19.4%), 가계부채상환(6.7%), 저축(2.2%) 순으로 나타났다. 수령금액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에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은 가구에서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가구가 16.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표 Ⅵ-45> 2011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사용용도 - 중복응답(단위:%)

		소비지출	저축	가계부채상환	기타
전체		71.7	2.2	6.7	19.4
수령 금액	100만원미만	72.9	0.0	6.0	21.1
	100~300만원미만	73.9	0.0	0.5	25.6
	300~500만원미만	73.3	13.1	0.0	13.5
	500만원이상	68.2	0.0	16.1	15.7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 결과 요약

가구원 조사는 조사년도 기준 작년 한 해 소득이 있었던 만15세 이상 가구원 또는 소득활동을 했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1백만원 이상 일 경우), 연금·보험소득, 기타 소득, 정부현금 보조금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소득의 전부인 가구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소득은 일종의 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세금 납부나 정부 지원과 같은 국가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며, 이미 가구 설문지에서 응답이 된 소득이므로 중복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득활동을 했던 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1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이나 친척의 사업에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왔던 무급가족종사자, 1개월 이상 직장에 다닌 사람, 매출만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 조사당시에는 가구원 설문지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고, 2차년도 조사 이후부터 가구원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조사표는 크게 경제활동 상태, 소득 및 연금·보험 관련 지출 현황, 근로소득공제현황, 소득공제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년도 조사부터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활동과 소득, 소비지출, 조세 납부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조사의 경우 조사년도의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파트에서 조사되는 항목은 소득활동 유무와 주로 일하는 곳, 주로 하는 일, 취업형태,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일주일 근로 일수, 요일별 근로 시간, 비경제활동인구 유무, 경제활동 인구 중 미 구직자 대상 구직 이유, 원하는 일자리 형태 및 근로 형태, 월평균 기대소득, 비경제활동 인구 미구직 활동 이유이다.

가. 소득활동 현황

재정패널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과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우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활동 유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취업형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의 구직활동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소득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1.8%, 2010년 80.9%, 2011년 81.6%, 2012년 80.7%가 소득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원 비율은 2009년 18.9%, 2010년 19.1%, 2011년 18.4%, 2012년 19.3%로 조사되었다.

<표 Ⅶ-1> 연도별 소득활동 현황 분포(조사시점 5월 기준)

년도	소득활동	비소득활동
2009	81.8	18.9
2010	80.9	19.1
2011	81.6	18.4
2012	80.7	19.3

1) 연도별 취업자 경제활동 현황

연도별 취업자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한 가구원 중 임금 근로자는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중 7명이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10%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2> 연도별 임금 근로자 취업 형태(단위: %)

년도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09	70.3	74.3	11.8	14.0
2010	70.5	74.3	12.7	13.0
2011	68.0	76.2	10.3	12.3
2012	68.6	73.1	13.2	11.2

또한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형태의 경우 전일제 근무자는 2012년 기준 93.1%로 조사되어 시간제 근무자(6.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 근무는 2008년 89.2%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무자는 2012년 기준 6.9%로 2009년 대비 약 3.9%p 감소하였다.

<표 Ⅶ-3> 연도별 임금 근로자 취업 형태 및 근무시간 형태(단위: %)

년도	임금근로자	전일제	시간제
2009	70.3	89.2	10.8
2010	70.5	88.8	11.2
2011	68.0	91.9	8.1
2012	68.6	93.1	6.9

전반적으로 소득활동 가구원 중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0% 수준이며, 특히 2012년도의 경우 그 비율이 31.4%로 2009년 대비(29.7%) 약 2%P 증가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4> 연도별 비임금 근로자 취업 형태(단위: %)

년도	비임금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2009	29.7	79.0	18.2	2.8
2010	29.5	81.3	15.9	2.7
2011	32.0	72.0	14.9	13.1
2012	31.4	73.6	14.3	12.1

2) 연도별 취업자 취업형태별 근로현황

취업자의 취업형태별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 산출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5.4일을 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무급가족 종사자(6.1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8일), 고용원을 둔 사업주(5.8일)의 경우 평균 근로 일수 보다 더 근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 일수가 임금 근로자 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외, 2011년의 근로일수와 2012년의 근로일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Ⅶ-5> 연도별 취업형태별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단위: 일)

년도	취업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2011	5.5	5.4	5.3	5.0	5.8	5.8	6.2
2012	5.4	5.3	5.3	5.0	5.8	5.8	6.1

취업자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8.5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취업형태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근로시간(9.1시간)이 다른 취업형태의 근로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7.7시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6> 연도별 취업형태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단위: 시간)

년도	취업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2011	8.6	8.8	8.2	8.7	8.6	9.3	7.7
2012	8.5	8.7	8.2	8.4	8.4	9.1	7.7

3) 연도별 미취업자 구직활동 현황

15세 이상 가구원 중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형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약 8명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자하는 응답자의 약 70%는 시간제 보다는 전일제 근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전일제 근무의 선호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Ⅶ-7> 연도별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형태(단위: %)

년도	임금근로자		
		전일제	시간제
2009	80.5	68.1	31.9
2010	71.9	68.8	31.2
2011	81.3	74.7	25.3
2012	88.3	77.1	22.9

4) 연도별 미취업자 구직활동 이유 및 월평균 기대소득

연도별로 소득활동이 없었던 가구원의 구직활동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10%가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직 활동 이유의 대부분은 생활비 획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자기발전, 기타 순이었다.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월평균 기대소득을 살펴보면 월 평균 기대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에는 2009년 대비 13% 증가한 155.9만원(중앙값 1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2년 기준 생활비 획득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개인의 월평균 기대소득은 평균 155.9만원(중앙값 120만원), 자기발전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평균 기대 소득은 평균 155.3만원(중앙값120만원)으로 구직활동 이유별로 기대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8> 연도별 미취업자 구직활동 이유 및 월평균 기대소득(단위: %, 만원)

년도	미취업자 전체		생활비 획득		자기발전		기타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2009	10.6	137.6 (100.0)	87.6	138.3 (100.0)	9.3	125.6 (140.0)	3.0	153.8 (150.0)
2010	9.0	164.1 (120.0)	79.9	162.6 (100.0)	17.4	182.6 (170.0)	2.7	89.0 (6.0)
2011	9.7	136.3 (100.0)	91.9	135.7 (100.0)	8.1	143.4 (150.0)	0.0	-
2012	9.7	155.9 (130.0)	89.5	155.9 (120.0)	10.5	155.3 (120.0)	0.0	-

나. 비소득활동자

2012년 5월 1일 기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7.4%로 산출되었다. 이들의 과반은 가구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건강상의 이유, 은퇴가 각각 약 20%, 10%로 나타났으며 학업. 육아 및 가사, 기타 사유는 매우 미미하였다.

<표 Ⅶ-9> 연도별 비소득활동 가구원 현황 및 구직 미 활동 이유

년도	비소득활동 가구원	학업	육아 및 가사	은퇴	건강상 이유	가구소득 충분	기타
2008	16.9	2.4	1.4	11.0	23.2	55.5	1.4
2009	17.4	1.2	2.5	14.4	20.2	56.2	1.4
2010	24.5	0.8	3.3	12.4	20.6	57.4	1.6
2011	17.4	0.5	2.0	13.7	21.7	56.2	1.5

2. 가구원 소득 현황

재정패널 조사는 연간 해당 가구원의 소득현황을 살펴보고자 소득을 크게 연금 및 보험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 정부 지원 현금소득 유무 및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시 수급액의 경우 연간 수급액으로 산출 하였으며 평균 및 중앙값 산출시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가. 연금보험 소득 현황

연금 및 보험 소득의 경우 크게 사회보험 수급액과 민간연금 및 보험 수급액 현황을 조사하였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나누어 유형별 수급 개월 수와 연간 수급 총액을 조사하였다. 민간연금 및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저축, 연금보험,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 저축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나누어 소득유무와 연간 수급액을 파악하였다.

1) 사회보험 소득 현황

사회보험 소득유무와 연간 수급액 현황을 살펴보고자 사회보험을 크게 국민연금, 공적연금, 공적보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민연금 수급자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공적연금의 경우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장해연금(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유족연금, 퇴직 일시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공적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수급자가 포함된다.

사회보험 소득 분석결과, 수급자의 비율은 2011년 기준 9.0%이었다. 이는 2007년 대비 2.9%p 오른 수치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74.5%, 공적연금 수급자는 20.5%, 공적보험 수급자는 5.8%로, 사회보험 수급자 10명중 7명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 유형별 사회보험의 연간 수급액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공적보험, 국민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기준 공적연금은 평균 1,994.1(중앙값 2,052)만원, 국민연금 평균 353.9(중앙값 250.0)만원, 공적보험 평균 1,097.3(중앙값 5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보훈연금의 경우 4차년도 조사부터 정부지원현금소득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5차 이후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제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된 결과임을 유의해야한다.

<표 Ⅶ-10> 연도별 사회보험 수급 현황 - 중복응답(단위:%,만원)

년도	전체	국민연금		공적연금		공적보험	
		해당 가구원	수금액	해당 가구원	수금액	해당 가구원	수금액
2007	6.1	71.2	293.0 (211)	23.5	1619.4 (1560)	6.6	1010.5 (540)
2008	7.1	68.8	297.6 (216)	21.4	1946.8 (2040)	10.7	766.7 (320)
2009	8.0	72.8	286.8 (216)	17.2	1888.7 (1920)	11.5	691.3 (400)
2010	7.4	73.4	319.9 (252)	21.3	1977.8 (1920)	6.4	766.0 (390)
2011	9.0	74.5	353.9 (250)	20.5	1994.1 (2052)	5.8	1097.3 (550)

2) 민간연금 및 보험 현황

민간 연금 및 보험 소득 및 연간 수급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저축에 대한 소득 유무 및 연간 수급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민간 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 저축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유무와 연간 수급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도별 민간연금 및 보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3%가 민간연금 및 보험을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민간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10%미만이었으며, 90% 이상이 민간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액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민간연금 평균 1,021.2(중앙값 225.0)만원, 민간보험 급여 410.2(중앙값 100.0)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연금은 4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며, 농지연금은 5차년도 조사부터 문항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4차년도와 5차년도는 해당 민간연금에 대한 응답값이 포함되어 산출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표 Ⅶ-11> 연도별 민간연금 및 보험 수급 현황 - 중복응답(단위:%,만원)

년도	전체	민간연금		민간보험급여	
		해당 가구원	수금액	해당 가구원	수금액
2007	1.8	6.2	438.7 (180)	93.8	372.6 (120)
2008	3.1	7.5	1258.0 (576)	93.5	324.5 (100)
2009	3.1	9.9	1053.9 (300)	91.3	278.7 (100)
2010	3.2	5.9	2318.1 (1200)	94.7	465.4 (100)
2011	3.1	5.8	1021.2 (225)	94.2	410.2 (100)

3) 정부지원 현금 소득 현황

정부지원 현금 소득의 경우 1~3차까지 사회보험에 포함해서 질문하였지만 4차년도 이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문항구조가 변경되었다. 이때 정

부지원 현금은 보훈연금, 노령연금, 기타 정부지원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보훈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연금을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기타 정부지원금의 경우 농어업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보훈수당, 그 외 기타 소득을 포함시켜서 조사하였다.

연도별 정부지원현금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응답자의 17.8%, 2010년 전체 응답자의 15.3%가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대상 수급자 중 84%이상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연간 수급액은 2011년도 기준으로 106.0(중앙값 10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훈연금의 경우 수급자는 7% 이하로 매우 적었으나 연간 수급액은 2011년도 기준 평균 615.0(중앙값 360)만원으로 조사되어 노령연금 및 기타 정부지원 현금 소득보다 높았다. 농어업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보훈수당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응답 가구원의 약 15%가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령자의 평균 연간 수급액은 2010년도 173.7(중앙값 133)만원, 2011년 140.1(중앙값 1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2> 연도별 정부지원현금 수급 현황 - 중복응답(단위:%,만원)

년도	전체	보훈연금		노령연금		기타	
		해당 가구원	수금액	해당 가구원	수금액	해당 가구원	수금액
2010	15.3	7.0	594.4 (414)	84.4	110.6 (108)	15.7	173.7 (133)
2011	17.8	6.3	615.0 (360)	85.5	106.0 (108)	15.2	140.1 (144)

나. 가구원 연간 소득

가구원의 연금 및 보험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파악하고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타가구 이전 소득, 노인요양특별급여 및 기타 소득의 유무 및 연간 소득 총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소득 유형별 연간 금액의 평균 및 중앙값은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모름·무응답의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하여 산출하였다.

연도별 연간 소득 유무[12]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전체의 58.2%로 매년 약 60%의 수준의 응답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평균금액은 2011년 기준 2,938.6(중앙값 2,4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7년(2,662.9만원)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소득자는 2011년 22.4%로 매년 22~24% 수준이었다. 부동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약 7~10% 수준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비슷한 평균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동산 소득의 경우 2011년 기준 1033.8(중앙값 600)만원 이였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2011년 기준 493.8(중앙값 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소득 유무의 경우 3차년도 조사까지 응답자의 약 30%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4차년도 이후로는 20%만 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연도별로 명목적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실질 소득이 올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가상승률과 같은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12) 연간소득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은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케이스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년도 18.5%, 2차년도 45.6%, 3차년도 44.7%, 4차년도 35.9%, 5차년도 36.1%로 나타났다.

<표 Ⅶ-13> 연도별 가구원 연간 소득 현황(단위:%,만원)

유형	2007		2008		2009		2010[13]		2011	
	해당 가구원	수급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수급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수급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수급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수급액 평균 (중앙값)
근로	57.3	2662.9 (2200)	59.5	2631.7 (2000)	59.6	2665.9 (2039)	58.1	2856.7 (2349)	58.2	2938.6 (2400)
사업	22.9	2767.6 (2000)	24.1	2266.0 (1800)	22.7	2470.8 (1800)	23.3	2682.6 (1800)	22.4	2471.6 (1800)
부동산	4.3	1074.0 (540)	5.4	929.0 (480)	5.3	1026.5 (600)	5.6	986.3 (491)	6.5	1033.8 (600)
이자 및 배당	2.8	559.4 (225)	3.0	607.0 (300)	2.4	601.7 (300)	3.8	467.7 (240)	3.1	493.8 (300)
기타	31.4	399.7 (180)	32.3	435.2 (192)	31.8	379.4 (192.8)	16.2	589.5 (250)	18.3	540.4 (250)

13) 4차년도 연간소득 분석시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구원 조사에 응답한 20-30대 기혼 여성 및 그 배우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세내용은 “1-5차년도 재정패널사용자안내서” 참조

3. 연간 연금보험 지출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원의 사회보험 지출 현황과 민간보험 지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 지출에는 공적연금,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및 납부 금액을 조사하였다. 공적연금에서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과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납부금액과 작년 한 해 동안의 납부기간을 조사하였고, 은퇴 후 연간 연금 기대 소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외 본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민간 보험 또는 민간 연금이 있는 경우 연간 납부 총액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가. 공적 연금 및 보험 관련 지출

1) 공적 연금 지출 현황

공적 연금 지출에 대한 조사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어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특수직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납입금액을 연간 단위로 조사하였지만 4차년도 이후로 월간 납입급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비교를 위해 월평균 납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평균 및 중앙값을 산출하였다.

연도별 공적 연금을 납부한 개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응답자의 50.7%가 국민연금 가입상태이었다. 이는 2007년 대비 6.9%p상승한 수치이며 2010년도 대비 10.4%p높은 것이다. 반면 특수직 연금의 경우 2011년 5.2%로 2007년(3.8%)과 2010년(4.4%) 수치를 제외하면 5% 초반으로 매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수가 적은 것은 특수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직업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공적연금의 연간 납부금액은 국민연금 124.6(중앙값 108)만원, 특수직 연금 261.1(중앙값 240만원) 으로 나타났다.

<표 Ⅶ-14> 연도별 공적연금 지출 현황(단위: %,만원)

년도/유형		해당 가구원 비율	지출액 평균 (중앙값)
2007	국민연금	43.8	126.2 (120)
	특수직연금	3.8	194.9 (177)
2008	국민연금	48.2	118.6 (108)
	특수직연금	5.2	196.5 (76)
2009	국민연금	46.2	118.8 (108)
	특수직연금	5.4	226.8 (216)
2010	국민연금	40.3	120.8 (109)
	특수직연금	4.4	260.0 (240)
2011	국민연금	50.7	124.6 (108)
	특수직연금	5.2	261.1 (240)

2) 공적 보험 지출 현황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대상 가구원 10명 중 6명 이상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 비율이 2008년 한 해 동안 85.6%로 두드러지게 높은 모습을 보였다. 직장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간 납부 금액은 2011년도 기준 평균 105.5(중앙값 85)만원이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응답자의 30~40%가 가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10년의 가입가구원 비율이 30.2%로 가장 낮고, 2011년 한해 동안 가입하였던 가구원의 비율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간 총 납부 금액은 2011년도 기준 평균 16.5(중앙값 1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Ⅶ-15> 연도별 공적보험 지출 현황(단위:%,만원)

년도/항목		해당개인	지출액 평균 (중앙값)
2007	건강보험료	66.5	84.6 (70)
	고용보험	36.9	14.7 (12)
2008	건강보험료	85.6	87.7 (72)
	고용보험	35.4	14.9 (11)
2009	건강보험료	65.2	90.7 (72)
	고용보험	34.7	12.8 (10)
2010	건강보험료	62.4	103.0 (84)
	고용보험	30.2	13.7 (12)
2011	건강보험료	65.0	105.5 (85)
	고용보험	41.1	16.5 (13)

나. 민간 연금・보험 관련 지출

가구원 본인 명의로 계약한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펀드·연금신탁, 연금보험, 보장보험[14](질병·상해·사망), 저축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납부액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민간보장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은 2007년(50.8%)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그 가입자 비율이 60.9%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 외 자동차 보험 30% 후반에서 40% 초반의 가입자 비율을 보였고, 연금보험의 경우 2008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1년에 들어와 10% 이하로 하락하였다.

14) 단, 가입한 보험 상품이 저축성과 보장성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표 Ⅶ-16> 연도별 민간연금 및 보험 지출 현황 - 중복응답(단위:%,만원)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해당 가구원	납부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납부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납부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납부액 평균 (중앙값)	해당 가구원	납부액 평균 (중앙값)
퇴직연금	0.8	260.2 (180)	0.9	302.9 (180)	0.4	222.5 (180)	0.4	254.7 (120)	0.5	348.9 (240)
연금저축·연금펀드 ·연금신탁	7.1	291.2 (240)	5.2	267.9 (40)	6.1	271.6 (246)	4.9	346.1 (300)	5.0	358.6 (250)
연금보험	6.9	288.7 (228)	10.1	296.4 (240)	10.2	306.5 (240)	11.6	327.8 (240)	9.1	331.6 (240)
보장보험	50.8	195.0 (120)	53.2	186.4 (132	56.6	187.8 (144)	59.8	187.2 (144)	60.9	191.6 (148)
저축보험	3.3	284.4 (202)	6.3	283.8 (200)	4.8	380.5 (240)	5.4	338.3 (240)	5.0	416.2 (240)
자동차 보험	39.8	68.6 (60)	35.5	70.7 (60)	37.3	67.2 (60)	42.7	71.0 (60)	39.8	69.1 (60)

민간 보험 및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가구원의 평균 납부액과 중앙값을 살펴본 결과 2011년 기준 퇴직연금은 348.9(중앙값 240)만원, 연금저축·연금펀드·연금신탁의 경우 358.6(중앙값 250)만원, 연금보험 331.6(중앙값 240)만원, 보장보험 191.6(중앙값 148)만원, 저축보험 416.2(중앙값 240) 만원, 자동차보험 69.1(중앙값 60)만원 이었다.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개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출 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카드 사용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현황

연도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 가구원을 살펴보면 모든 차수에 걸쳐 50% 이상의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7년 53.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62.7%로 가장 높은 보유자 비율을 보였다가 2011년(61.6%)의 경우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2007년 27.1%에서 2010년 34.0%로 약 7%p 증가하였다가 2011년 32.0%로 소폭 하락하였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2010년도 조사까지 평균 약 1,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중앙값은 약 700~8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도 조사에서는 한 해 평균 사용금액이 약 200만원 증가한 약1,200만원(중앙값 960)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2007년 평균 409.9(중앙값 275)만원에서 2011년 평균 341.8(중앙값 206)만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단, 1차년도 조사 당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사용금액에 대한 질문만 있었던 관계로 연도간 비교를 위해 사용금액이 0만원을 초과인 경우에 대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Ⅶ-17> 연도별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현황(단위:%,만원)

년도/항목		보유 비율	사용 금액 평균 (중앙값)
2007	신용·직불카드	53.8	1016.5 (700)
	현금영수증	27.1	409.9 (275)
2008	신용·직불카드	60.5	988.1 (700)
	현금영수증	31.0	378.2 (221)
2009	신용·직불카드	61.7	1018.1 (720)
	현금영수증	33.8	355.4 (200)
2010	신용·직불카드	62.7	1098.9 (800)
	현금영수증	34.0	341.6 (200)
2011	신용·직불카드	61.6	1231.6 (960)
	현금영수증	32.0	341.8 (206)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카드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카드 사용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0명중 약 7~8명은 '별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카드 사용액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약 10%후반, '매우 증가'한다는 응답이 약 2%, '다소 감소' 및 '매우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2%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로 의견의 차이는 크지는 않았으나, 2007년과 2011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8.6%p 수준 증가하고, 사용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다소 증가'와 '매우 증가')이 각각 2.7%p, 1.6%p 감소하였다.

<표 Ⅶ-18> 연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단위:%)

년도	매우 증가	다소 증가	영향 없음	다소 감소	매우 감소	모름·무응답
2007	3.3	17.3	74.4	0.8	0.3	4.0
2008	2.3	19.2	76.2	0.8	0.1	1.4
2009	3.0	18.8	77.3	0.5	0.3	0.1
2010	2.8	18.4	76.3	1.8	0.6	0.0
2011	1.7	14.6	83.0	0.6	0.0	0.0

5. 소득공제 내역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원들의 소득공제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여 항목별 연말정산 현황 및 공제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납부 세금의 결정세액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유형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 소득세 납부 현황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했던 가구원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연말 정산자는 2011년 기준 37.3%로 나타났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0.4%로 나타났다. 그 수치는 매년 큰 변동은 없었으나 조사 첫 해 였던 2007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비율이 각각 34.6%와 9.7%로 가장 낮고, 이후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자는 36~3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0~11% 수준이었다. 이렇듯 2007년의 결과가 다른 조사년도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비표본오차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절에서 다루는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세금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탓에 조사 첫해의 경우 조사원과 응답자간의 관계 형성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응답이 정확하지 못하였거나, 응답자가 정직하게 응답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에 대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응답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표 Ⅶ-19> 연도별 소득세 납부 현황(단위:%)

년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2007	34.6	9.7
2008	36.9	10.8
2009	37.3	11.9
2010	36.9	11.6
2011	37.3	10.4

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가구원 공제 현황 및 결정세액

1) 근로소득세 공제액 현황

근로소득 공제현황을 파악하고자 공제항목을 연금보험, 보험(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기타 총 12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해당 유무 및 공제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각 공제내역은 정책에 따라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장기주식형 소득공제의 경우 200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었으며, 혼인·장례·이사비 공제는 2009년에 귀속 소득에서 제외되었고, 2011년에는 연금보험이 추가되었다.

2011년 항목별 공제항목 해당 유무 비율은 특별공제 항목인 보험료가 80.1%로 가장 높았고, 연금보험 77.1%, 신용카드 사용금액 56.6%, 기부금 32.6%, 교육비 30.7%, 의료비 27.2%, 주택자금 18.0%, 연금저축 15.2% 순이었다. 그 외 항목은 5%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표 Ⅶ-20> 연도별 근로소득 공제액 현황(단위:%,만원)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연금보험	-	-	-	-	-		-	-	77.1	145.6(132)
보험(특별공제)	93.0	174.6(175.5)	98.0	172.0(174)	79.9	183.1(181)	81.3	192.8(193)	80.1	197.5(196)
의료비	27.7	149.3(75)	27.2	188.4(107)	25.3	194.8(103)	27.0	200.0(132)	27.2	218.4(127)
교육비	31.1	275.2(200)	35.1	277.0(200)	32.6	325.0(290)	34.4	308.4(280)	30.7	312.2(278)
주택자금	12.5	185.5(120)	17.6	158.5(96)	16.4	183.1(115)	17.1	196.1(120)	18.0	196.9(120)
기부금	26.3	132.4(65.3)	27.8	138.5(65)	30.5	135.6(55)	33.4	116.9(39)	32.6	112.7(36)
개인연금	6.6	59.1(72)	4.3	50.4(61)	4.1	45.9(48)	3.2	51.7(62)	2.7	51.5(62)
연금저축	9.8	198.0(240)	9.8	212.2(240)	11.8	221.0(250)	14.3	232.9(300)	15.2	261.0(300)
투자조합출자	0.0	50.0(50)	0.2	431.3(25)	0.3	310.7(250)	-	-	0.1	37.5(14)
신용카드사용금액	62.4	165.6(135)	65.9	237.3(210)	57.9	231.9(204)	59.8	189.4(200)	56.6	197.6(220)
우리사주조합출자	0.4	287.2(400)	0.3	281.8(400)	0.9	314.8(400)	0.5	213.6(200)	0.5	312.9(400)
장기주식형저축	-	-	0.3	21.3(20)	1.6	48.6(24)	1.4	40.0(39)	1.4	20.3(17)
기타	0.1	300.0(300)	0.8	103.9(60)	0.3	178.3(300)	0.6	194.0(100)	0.4	218.9(70)
혼인장례이사비	1.7	110.4(100)	0.8	100.0(100)	-	-	-	-	-	-

항목별 공제금액의 평균 및 중앙값의 경우 공제 받은 가구원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2011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출자가 평균 319.9(중앙값 4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교육비(312.9만원), 연금 저축(261만원), 의료비(218.4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197.6만원), 보험(특별공제)(197.5만원), 주택자금(196.9만원), 연금보험(145.6만원), 기부금(112.7만원), 투자조합출자(37.5만원), 장기주식형저축(20.3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험(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증가한 반면 기부금, 개인연금, 투자조합출자의 경우는 공제 금액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제 비율 및 한도의 변화 또는 지출 규모의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소득 결정세액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대상 연도별 연간 근로소득 결정세액 평균을 살펴보면 2007년 107.6(중앙값 35)만원, 2008년 88.5(중앙값 20)만원, 2009년 88.3(중앙값 15)만원, 2010년 91.8(중앙값 17)만원, 2011년 98.9(중앙값 20)만원으로 나타나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21> 연도별 근로소득 결정세액(단위:%,만원)

년도	응답 가구원	사용 금액
2007	34.6	107.6 (35)
2008	36.9	88.5 (20)
2009	37.3	88.3 (15)
2010	36.9	91.8 (17)
2011	37.3	98.9 (20)

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가구원 공제 현황 및 결정세액

1) 종합소득세 공제액 현황

종합소득세 현황을 파악하고자 공제 유형을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표준공제,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 유무와 공제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만 종합소득세 공제액 현황의 경우 근로소득자 공제액 현황과 비교하여 증빙서류[15]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고, 회상에 의한 응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공제항목 공제액 평균 및 중앙값을 산출해 보면 2011년 기준 연금저축이 평균 205.4(중앙값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기타 평균 165.2(중앙값 120)만원, 연금보험 136.3(중앙값 114)만원, 기부금 117.5(중앙값 50)만원, 표준공제 61.2(중앙값 60)만원, 개인연금저축 28.6(중앙값 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공제액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연 60만원을 공제함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자 대상으로 연도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평균 125.1(중앙값 35)만원, 2008년 57.6(중앙값 35)만원, 2009년 77.7(중앙값 0)만원, 2010년 63.7(중앙값 0)만원, 2010년 41.8(중앙값 0)만원으로 조사되어 2007년 이후 100만원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 32페이지 '가구원 기준 소득증빙자료 수집 현황표' 참고

<표 Ⅶ-22> 연도별 종합소득세 공제액 현황(단위:%,만원)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해당 유무	평균(중앙값)
연금보험	28.9	133.0 (108)	30.9	146.5 (114)	30.0	140.6 (120)	30.0	142.0 (119)	31.3	136.3 (114)
기부금	12.4	178.0 (100)	8.9	130.3 (93)	7.0	141.4 (100)	7.0	144.1 (92)	6.7	117.5 (50)
개인연금저축	4.1	66.2 (72)	1.6	65.5 (72)	1.1	61.3 (72)	1.1	54.0 (65)	0.9	28.6 (20)
연금 저축	2.8	227.9 (240)	3.3	163.5 (200)	4.7	226.2 (275)	4.7	240.1 (300)	5.6	205.4 (200)
투자조합출자	0.3	200.0 (200)	0.0	0.0 (0)	0.0	24.0 (24)	0.0	0.0 (0.0)	0.0	0.0 (0.0)
장기 주식형 저축	-	-	0.1	0.0 (0)	0.1	0.0 (0.0)	0.0	0.0 (0.0)	0.0	24.0 (24)
표준공제	-	-	62.0	65.6 (60)	95.0	63.0 (60)	95.2	60.9 (60)	75.0	61.2 (60)
기타	99.0	61.8 (60)	2.7	341.0 (497)	1.2	142.6 (121)	1.2	169.4 (185)	2.4	165.2 (120)

<표 Ⅶ-23> 연도별 종합소득세 결정새액(단위:%,만원)

년도	사용 금액	사용 금액
2007	9.7	125.1 (35)
2008	10.8	57.6 (35)
2009	11.9	77.7 (0)
2010	11.6	63.7 (0)
2011	10.4	41.8 (0)

6.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

재정패널조사는 조세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식에 대해 조사하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통일세 신설에 대한 견해를 추가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저소득층 복지정책

1) 2011년 저소득층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저소득층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으로 응답자 10명중 5명이 찬성(50.7%: 대체로 42.6%, 매우 8.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35.1%), 반대(13.9%: 대체로 12.4%, 매우 1.5%)순 이었다.

<표 Ⅶ-24> 2011년 저소득층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단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체	8.2	42.6	35.1	12.4	1.5
성별	남	7.4	42.5	35.7	12.8	1.4
	여	9.2	42.7	34.4	11.8	1.6
연령대	20대 미만	5.3	41.4	38.1	14.3	0.8
	30대	7.9	42.1	39.2	10.0	0.7
	40대	9.8	41.9	33.6	13.0	1.7
	50대 이상	7.9	43.3	33.3	13.0	2.0
개인소득	1분위	10.6	41.6	33.5	12.1	2.0
	2분위	7.6	43.2	35.5	12.2	1.5
	3분위	7.6	41.3	36.8	13.1	1.2
	4분위	7.1	42.6	35.7	13.1	1.5
	5분위	5.5	43.7	35.7	13.8	0.9

2) 2011년 저소득층 복지정책 확대 시 추가 부담할 세금

저소득층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찬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확대 시 현재 세금의 어느 정도 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부담할 의향 없다는 의견이 4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5%미만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46.6%, 현재 세금의 5%이상 부담하겠다는 경우는 응답자의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자(51.9%) 50대 이상(54.1%), 개인 소득 1분위(54.5%)의 절반 이상이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세금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담하겠다는 세율 또한 높았다.

<표 Ⅶ-25> 2011년 저소득층 복지정책 확대 시 추가 세금 부담율(단위:%)

		부담 의향 없음	현재 세금 5% 미만	현재 세금 5%~10% 미만	현재 세금 10~15% 미만	현재 세금 15% 이상
	전체	48.1	46.6	4.4	0.6	0.2
성별	남	45.1	49.2	4.8	0.6	0.3
	여	51.9	43.3	3.9	0.7	0.2
연령대	20대 미만	44.9	49.7	3.6	1.8	0.0
	30대	44.5	49.7	5.1	0.4	0.3
	40대	41.4	51.5	5.9	0.9	0.3
	50대 이상	54.1	41.9	3.4	0.5	0.2
개인소득	1분위	54.5	41.9	2.6	1.0	0.0
	2분위	48.6	46.8	4.1	0.1	0.3
	3분위	48.2	46.6	4.4	0.6	0.2
	4분위	40.3	52.3	6.2	0.8	0.4
	5분위	34.2	58.3	6.3	1.0	0.2

나. 통일세 신설

1) 2011년 통일세 신설에 대한 의견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 응답자의 41.9%가 반대(대체로 30.7%, 매우: 11.2%)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보통(33.3%), 찬성(24.6%: 대체로 21.2%, 매우 3.4%)순 이었다. 통일세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 이상의 27.7%가 찬성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반대의 경우 30대(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Ⅶ-26> 2011년 통일세 신설에 대한 의견(단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체	3.4	21.2	33.3	30.7	11.2
성별	남	3.3	21.9	32.8	30.4	11.3
	여	3.4	20.2	33.9	31.0	11.1
연령대	20대 미만	2.8	17.0	37.5	30.5	12.3
	30대	2.0	19.3	33.3	31.7	13.5
	40대	2.7	20.6	33.5	32.2	10.9
	50대 이상	4.6	23.1	32.5	29.3	10.0
개인소득	1분위	3.7	21.8	32.7	28.2	13.5
	2분위	2.9	19.7	32.5	34.2	10.5
	3분위	3.0	17.5	36.3	32.3	10.8
	4분위	2.4	23.2	32.5	30.2	11.7
	5분위	3.1	24.2	32.5	28.6	11.3

2) 2011년 통일세 신설시 부담할 세금

통일세 신설에 대해 긍적적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세금의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할 의향이 없음이 50.1%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5% 미만으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은 43.0%로 내더라도 적은 부담을 갖고자 하고 있었으며, 현재 세금의 5~10% 미만은 5.1%, 현재 세금의 10~15%미만은 1.2%, 현재 세금의 15%이상은 0.6%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의 경우 여자(53.6%), 20대 미만(53.0%), 50대 이상, (54.7%), 개인 소득 1분위(55.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담하겠다는 의견은 남자(52.8%), 30대(55.3%), 40대(55.0%), 개인소득 4분위(57.0%), 개인소득 5분위(61.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Ⅶ-27> 2011년 통일세 신설시 추가 세금 부담율(단위:%)

		부담 의향 없음	현재 세금 5% 미만	현재 세금 5%~10% 미만	현재 세금 10~15% 미만	현재 세금 15% 이상
	전체	50.1	43.0	5.1	1.2	0.6
성별	남	47.3	45.4	5.4	1.3	0.7
	여	53.6	39.9	4.8	1.2	0.5
연령대	20대 미만	53.0	37.3	8.4	1.2	0.0
	30대	44.6	46.9	6.3	1.3	0.8
	40대	45.0	46.6	6.7	1.0	0.7
	50대 이상	54.7	40.3	3.2	1.3	0.5
개인소득	1분위	55.9	40.1	2.9	0.9	0.1
	2분위	49.6	42.8	5.7	1.3	0.6
	3분위	50.7	41.3	6.6	1.1	0.3
	4분위	42.9	46.8	7.5	1.4	1.3
	5분위	38.3	53.8	5.7	1.6	0.6

Ⅷ. 소득근거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재정패널조사는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재정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소득공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대상이 되었다. 반면,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매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서류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각 연도별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단,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단순히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1. 소득근거자료 제출 현황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를 대상으로 귀속연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7년 27.2%, 2008년 50.6%, 2009년 54.0%, 2010년 62.0%, 2011년 60.6%의 제출비율을 보였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비율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60%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사 첫 해(2007년 귀속자료) 대비 33.4%p 상승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 현황의 경우, 2007년 10.8%, 2008년 26.8%, 2009년 26.9%, 2010년 32.6%, 2011년 35.5%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제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에 비해 낮은 제출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조사 첫해(2007년 귀속)와 2011년 제출자 비율을 증가률을 살펴보면, 2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제출자 비율의 증가수준은 비슷하였다.

<표 Ⅶ-1> 연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 여부 현황(단위:%)

년도/제출 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2007	제출	27.2	10.8
	미제출	72.8	89.2
2008	제출	50.6	26.8
	미제출	49.4	73.2
2009	제출	54.0	26.9
	미제출	46.0	73.1
2010	제출	62.0	32.6
	미제출	38.0	67.4
2011	제출	60.6	35.5
	미제출	39.4	64.5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절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자료제출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남성 비율, 기혼자 비율, 응답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시지역 거주 여부로 구분하였고, 그

외 가구원 설문 본인 응답 여부에 따른 자료 제출 여부를 비교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자 중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가구원은 (가구원용)설문지를 본인이 응답한 경우가 56%, 다른 가구원이 대리 응답해준 경우가 44%로 본인이 응답한 경우가 약간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40.9세이었다. 남성과 여성 중에는 남성이 68.5%로 많았으며, 약 10명중 9명(87.3%) 가량 기혼자였다. 제출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4.6명이었으며, 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94.1%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본인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나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30.4%로 대리 응답자들의 미제출이 높은 것을 알수 있다. 제출자의 설문지 본인 응답여부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본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들이 소득근거자료 제출에도 수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미제출자의 평균연령은 41.9세로 제출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약 1세가량 미제출자가 높았다. 미제출자 중 남성의 비율은 68.2%로 제출자와 비슷한 비율이었다. 미제출자 중에서는 기혼자가 71.4%로 제출자보다 기혼자의 비율이 낮았다. 가구원수는 평균 5.6명이었고, 93.8%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Ⅶ-2> 연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특성 - 근로소득(단위:%,세,명)

년도/제출 여부		설문본인 응답	평균 연령	남성	기혼	가구원수	시지역
2007	제출	92.8	38.1	71.8	82.1	3.4	94.5
	미제출	43.1	40.4	75.4	80.1	3.5	97.2
2008	제출	78.8	39.2	72.9	84.3	3.5	95.0
	미제출	32.1	39.6	71.8	78.2	3.6	97.5
2009	제출	54.2	40.0	73.4	85.3	3.5	95.6
	미제출	30.0	39.9	69.7	76.0	3.6	97.3
2010	제출	55.6	40.7	70.9	85.9	3.5	93.9
	미제출	30.7	39.9	71.1	74.2	3.6	94.9
2011	제출	56.0	40.9	68.5	87.3	4.6	94.1
	미제출	30.4	41.9	68.2	71.4	5.6	93.8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 여부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근거자료 제출자의 가구원 설문 본인 응답 비율이 미제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7년도의 경우 격차가 40.2%p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 39.0%p, 2009년 14.3%p, 2010년 24.2%p, 2011년 18%p로 나타나 다른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출자와 미 제출자간 남성 비율을 비교해보면 2011년도 기준 미제출자의 남성 비율은 72.6%로 제출자(55.4%)에 비해 17.2%p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평균 연령, 기혼자 여부,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 시지역 거주 여부의 경우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평균 연령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Ⅷ-3> 연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특성- 종합소득(단위:%,세,명)

년도/제출 여부		설문본인 응답	평균 연령	남성	기혼	가구원수	시지역
2007	제출	89.5	42.8	59.2	96.1	3.6	96.1
	미제출	49.3	46.2	77.1	95.0	3.5	96.1
2008	제출	82.2	44.9	59.2	94.8	3.7	93.4
	미제출	43.2	46.5	75.7	96.0	3.6	94.0
2009	제출	57.8	46.3	61.4	96.0	3.7	94.0
	미제출	43.5	46.2	72.1	95.5	3.6	94.3
2010	제출	65.7	46.6	59.9	93.8	3.6	92.7
	미제출	41.5	47.1	72.5	95.2	3.6	93.9
2011	제출	64.0	47.0	55.4	94.3	3.6	94.6
	미제출	46.0	48.0	72.6	95.9	3.6	92.4

3. 가구 및 개인 소득 비교

본 절에서는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개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순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연금의 총 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소득은 가구 내 가구원 소득과 사적,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였다. 소득 산출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0이라고 정의하고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 처리하였다.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를 대상으로 소득 근거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연간 개인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제출자의 경우, 2007년 3,562.5만원, 2008년 3,651.6만원, 2009년 3,628.2만원, 2010년 3,782.9만원, 2011년 3,984.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제출자는 2007년 3,489.0만원, 2008년 3,391.5만원, 2009년 3,449.5만원, 2010년 3,613.0만원 2011년 3,510.5만원으로 나타나 제출자의 연간소득이 미제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연간 가구소득의 경우 제출자는 2007년 4,716.7만원, 2008년 4,907.9만원, 2009년, 4,983.6만원, 2010년 5,282.5만원, 2011년 5,498.4만원이었으며 미제출자는 2007년 4,947.5,만원 2008년 5,124.6만원, 2009년 5,359.7만원, 2010년 5,908.9 만원 2011년 5910.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미제출자의 가구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Ⅷ-4> 연도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 근로소득신고자(단위: 만원)

년도/제출 여부		연간 개인소득 평균 (중앙값)	연간 가구 소득 평균 (중앙값)
2007	제출	3562.5 (3118)	4716.7 (4091)
	미제출	3489.0 (3000)	4947.5 (4312)
2008	제출	3651.6 (3224)	4907.9 (4390)
	미제출	3391.5 (3000)	5124.6 (4300)

2009	제출	3628.2 (3230)	4983.6 (4270)
	미제출	3449.5 (3000)	5359.7 (4500)
2010	제출	3782.9 (3291)	5282.5 (4681)
	미제출	3613.0 (3000)	5908.9 (5000)
2011	제출	3984.4 (3473)	5498.4 (4825)
	미제출	3510.5 (2800)	5910.8 (5000)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개인 소득은 2007년 1,845.5만원, 2008년 1,204.3만원, 2099년 1,160.9만원, 2010년 1,490.6만원, 2011년 1,502.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제출자는 2007년 4,153.3만원, 2008년 3,970.9만원, 2009년 4,061.8만원, 2010년 4,865.6만원, 2011년 4,418.8만원으로 연도별 제출자와 미제출자 간의 소득 격차가 약 3,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은 제출자의 경우 2007년 3162.2만원, 2008년 2415.0만원, 2009년, 2354.7만원, 2010년 2877.5만원, 2011년 3058.9만원이였으며 미제출자는 2007년 5181.3만원, 2008년 5242.5만원, 2009년 5482.3, 2010년 6518.3만원 2011년 6165.6만원으로 소득격차가 약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5> 연도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 종합소득세신고자(단위: 만원)

년도/제출 여부		연간 개인소득 평균 (중앙값)	연간 가구 소득 평균 (중앙값)
2007	제출	1845.5 (1015)	3162.2 (1966)
	미제출	4153.3 (3200)	5181.3 (4372)
2008	제출	1204.3 (742)	2415.0 (1517)
	미제출	3970.9 (3000)	5242.5 (4160)

2009	제출	1160.9 (705)	2354.7 (1471)
	미제출	4061.8 (3000)	5482.3 (4273)
2010	제출	1490.6 (839)	2877.5 (1785)
	미제출	4865.6 (3600)	6518.3 (5000)
2011	제출	1502.4 (777)	3058.9 (2016)
	미제출	4418.8 (3600)	6165.6 (5000)

4. 가구 자산 및 부채 비교

본 절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근거 제출 여부에 따른 자산 및 부채상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및 기타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을 산출하였으며, 부채의 경우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을 포함하는 총 부채, 그 외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외 자가 주택 거주 비율 및 자동차 보유 여부도 분석 비교하였다. 이때 자산이나 부채가 없는 가구원의 경우 0으로, 모름·무응답의 경우 결측 값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근로소득 신고자 중 소득근거자료 제출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2007년 60.7%, 2008년 57.6%, 2009년 58.4%, 2010년 57.9%, 2011년 58.4%였으며 미제출자의 경우는 2007년 59.5%, 2008년 61.1%, 2009년 58.6%, 2010년 57.9%, 2011년 54.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득근거자료 제출자의 자동차 보유율은 2007년 65.4%, 2008년 62.8%, 2009년 65.1%, 2010년 60.1%, 2011년 61.3%였으며 미제출자의 경우는 2007년 62.7%, 2008년 65.0%, 2009년 63.2%, 2010년 62.5%, 2011년 62.0%로 제출자와 미제출자 모두 약 60%이상이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제출자는 2007년 3,227.9만원, 2008년 3,516.9만원, 2009년 3,741.5만원, 2010년 3,912.8만원, 2011년 4,309.6만원이었으며 미제출자의 경우 2007년 3,337.7만원, 2008년 3,273.5만원, 2009년 3,511.6만원, 2010년 4,411.9만원, 2011년 3,823.7만원으로 격차가 1%미만으로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동산 자산의 경우 제출자는 2007년 7,987.7만원, 2008년 9,552.5만원, 2009년 10,144.4만원, 2010년 11,224.4만원, 2011년 10,177.7만원이었으며 미제출자의 경우 2007년 8,665.7만원, 2008년 10,296.9만원, 2009년 11,296.2만원, 2010년 13,888.5만원, 2011년 12,184.4만원으로 나타나 미제출자가 제출자보다 부동산 자산이 더 많았으며 특히 2010년, 2011년의 경우 격차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과 그 외 기타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의 경우에도 제출자 2007년 11,222.3만원, 2008년 12,872.4만원, 2009년 13,986.1만원, 2010년 15,268.8만원, 2011년 14,560.1만원 미제출자 2007년 12,564.6만원, 2008년 13,750.4만원, 2009년 14,871.6만원, 2010년 17825.8만원, 2011년 16,025.9만원으로 미체출자의 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부채의 경우 제출자 기준 2007년 4,093.7만원, 2008년 4,414.0만원, 2009년 4,629.0만원, 2010년 4,803.9만원, 2011년 5,084.4만원 미제출자 2007년 3,879.2만원, 2008년 4,346.6만원, 2009년 4,354.0만원, 2010년 5,186.3만원, 2011년 5,085.2만원으로 제출자의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과는 반대였다. 따라서 순 자산의 경우도 미제출자가 제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6>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근로소득신고자(단위: 만원)

년도/제출 여부		자가 거주	자동차 보유	금융자산 평균 (중앙값)	부동산자산 평균 (중앙값)	총자산 평균 (중앙값)	총부채 평균 (중앙값)	순자산 평균 (중앙값)
2007	제출	60.7	65.4	3227.9 (1500)	7987.7 (700)	11222.3 (4300)	4093.7 (1000)	7120.4 (3000)
	미제출	59.5	62.7	3337.7 (500)	8665.7 (500)	12564.6 (4720)	3879.2 (300)	8641.7 (3000)
2008	제출	57.6	62.8	3516.9 (1420)	9552.5 (1800)	12872.4 (5072)	4414.0 (1500)	8520.9 (3300)
	미제출	61.1	65.0	3273.5 (1250)	10296.9 (1000)	13750.4 (4700)	4346.6 (700)	9380.1 (3240)
2009	제출	58.4	65.1	3741.5 (1500)	10144.4 (1200)	13986.1 (4800)	4629.0 (2000)	7674.2 (3200)
	미제출	58.6	63.2	3511.6 (1500)	11296.2 (500)	14871.6 (4364)	4354.0 (700)	8248.2 (3000)
2010	제출	57.9	60.1	3912.8 (1600)	11224.4 (2000)	15268.8 (6000)	4803.9 (1500)	10453.1 (4000)
	미제출	57.9	62.5	4411.9 (1850)	13888.5 (1000)	17825.8 (5000)	5186.3 (500)	12562.3 (3800)
2011	제출	58.4	61.3	4309.6 (1536)	10177.7 (1000)	14560.1 (5980)	5084.4 (1500)	9372.3 (4080)
	미제출	54.8	62.0	3823.7 (1500)	12184.4 (2000)	16025.9 (5500)	5085.2 (200)	10861.9 (4300)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신고자의 자가거주율은 2007년 65.4%, 2008년 62.8%, 2009년 65.1%, 2010년 60.1%, 2011년 61.3%였으며 미제출자는 2007년 62.7%, 2008년 65.0%, 2009년 63.2%, 2010년 62.5%, 2011년 62.0%로 제출자, 미제출자 모두 약60%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비율 또한 2007년 90.6%, 2008년 86.7%, 2009년 88.1%, 2010년 87.1%, 2011년 87.1%였으며 미제출자는 2007년 84.3%, 2008년 87.9%, 2009년 88.5%, 2010년 87.1%, 2011년 85.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제출자는 2007년 3,461.1만원, 2008년 3,426.0만원, 2009년 3,377.8만원, 2010년 4,906.3만원, 2011년 4,251.9만원, 미제출자는 2007년 3,357.9만원, 2008년 3,449.7만원, 2009년 3,450.4만원, 2010년 4,983.6만원, 2011년 4,190.8만원으로 규모가 거의 비슷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제출자는 2007년 17,082.9만원, 2008년 15,239.8만원, 2009년 13,818.2만원, 2010년 17,858.4만원, 2011년 21,453.3만원이었으며 미제출자의 경우 2007년 15,380.2만원, 2008년 15,861.4만원, 2009년 15,800.4만원, 2010년 17,751.4만원, 2011년 17,871.3만원으로 나타나 비슷한 규모였으며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대상 비교 결과와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총 자산의 경우에도 제출자 2007년 21,101.1만원, 2008년 19,393.6만원, 2009년 17,365.2만원, 2010년 22,845.1만원, 2011년 26,056.2만원 미제출자 2007년 19,375.5만원, 2008년 19,717.4만원, 2009년 19,574.4만원, 2010년 22,635.1만원, 2011년 22,259.6만원으로 제출자와 미제출자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반면 총부채의 경우 제출자 기준 2007년 7,015.7만원, 2008년 7,102.9만원, 2009년 6,528.6만원, 2010년 8,586.2만원, 2011년 8,184.9만원 미제출자 2007년 7,825.0만원, 2008년 8,023.1만원, 2009년 7,189.1만원, 2010년 7,395.0만원, 2011년 7,243.1만원으로 미제출자의 부채가 더 작았으며 결과적으로 순 자산은 미제출자가 제출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7> 연도별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자(단위: 만원)

년도/제출 여부		자가 거주	자동차 보유	금융자산 평균 (중앙값)	부동산자산 평균 (중앙값)	총자산 평균 (중앙값)	총부채 평균 (중앙값)	순자산 평균 (중앙값)
2007	제출	65.4	90.6	3461.1 (1700)	17082.9 (2000)	21101.1 (5900)	7015.7 (2500)	14085.3 (3000)
	미제출	62.7	84.3	3357.9 (1000)	15380.2 (1200)	19375.5 (5000)	7825.0 (2000)	11597.4 (2000)
2008	제출	62.8	86.7	3426.0 (1320)	15239.8 (2700)	19393.6 (5078)	7102.9 (3000)	12278.4 (3000)
	미제출	65.0	87.9	3449.7 (1320)	15861.4 (2000)	19717.4 (5500)	8023.1 (2000)	11739.4 (2000)
2009	제출	65.1	88.1	3377.8 (1200)	13818.2 (2000)	17365.2 (5380)	6528.6 (2500)	11250.1 (3190)
	미제출	63.2	88.5	3450.4 (1200)	15800.4 (3000)	19574.4 (6280)	7189.1 (2000)	11184.2 (3770)
2010	제출	60.1	87.1	4906.3 (1560)	17858.4 (3500)	22845.1 (7530)	8586.2 (2950)	14227.7 (5000)
	미제출	62.5	87.1	4983.6 (1600)	17751.4 (3000)	22635.1 (7240)	7395.0 (2000)	15336.1 (5000)
2011	제출	61.3	87.1	4251.9 (2000)	21453.3 (4000)	26056.2 (7100)	8184.9 (2660)	17866.6 (5572)
	미제출	62.0	85.7	4190.8 (2000)	17871.3 (4000)	22259.6 (7000)	7243.1 (2500)	15072.3 (4700)

참고 문헌

방하남·황수경·김기헌·김지경·박시내·이상호,『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Ⅳ)』, 한국노동연구원, 2001.

송헌재,『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2012, pp. 97-133.

재정패널조사, 『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재정패널조사, 『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

재정패널조사, 『4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

통계개발원,『한국의 인구, 주택: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보고서』, 통계개발원, 2008.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5.